

의안번호	제 2016 - 6 호
보 고 연 월 일	2016. 3. 28. (제71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1. 사건 접수	1
2. 처리 현황	16
I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37
III. 자문위원 신규 위촉 및 위촉식 개최	38
1. 개요	38
2. 자문위원 명단	38
3. 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39
IV. 2016년도 양형위원회 제6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40
1. 개요	40
2. 참석 현황	40
3. 회의 내용	40
4. 자문의견 요약	40
5. 향후 계획	45
V.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 준안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결과 보고	46

1. 개요	46
2.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47
3.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83
 VI.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2차 공청회 결과 보고	95
1. 공청회 개요	95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95
 VII. 전문위원 개임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	96
1. 전문위원 개임	96
2.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98
 VIII.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 준 및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99
1. 개요	99
2. 관련 규정	99
3. 공개 방법	100
4. 추진 일정	100
 IX.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01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101
2. 서면 질의 및 회신	103
 □ 별지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사건 접수

○ 제1기, 제2기, 제3기 및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2015. 11. 30.까지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제1기 대상범죄(2009. 7. 1. ~ 2015. 11. 30.)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살인범죄	강간살인	5	0	5
	강도살인	76	16	92
	강도살인미수	25	3	28
	살인	1,621	255	1,876
	살인교사	6	0	6
	살인미수	2,224	308	2,532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41	5	46
	유사강간살인	0	1	1
	존속살해	167	23	190
	존속살해미수	80	21	101
	특가법(보복살인등)	1	1	2
	폭처법(단체등의살인)	1	0	1
	전체	4,248	633	4,881
뇌물범죄	뇌물공여	2,870	381	3,251
	뇌물공여교사	2	0	2
	뇌물공여약속	3	1	4
	뇌물공여의사표시	13	23	36
	뇌물수수	2,017	276	2,293
	뇌물약속	2	0	2
	뇌물요구	4	5	9
	부정처사후수뢰	99	14	113
	수뢰후부정처사	112	6	118
	제3자뇌물교부	152	30	182
	제3자뇌물취득	163	37	200
	특가법(뇌물)	680	93	773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특가법(뇌물)교사	1	0	1
	전체	6,118	866	6,984
성범죄	강간	1,334	325	1,659
	강간살인	5	0	5
	강간상해	857	107	964
	강간치사	7	0	7
	강간치상	1,454	122	1,576
	강도강간	90	2	92
	강제추행	10,572	3,149	13,721
	강제추행상해	183	41	224
	강제추행치상	607	67	674
	미성년자의제강간	107	23	130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11	1	1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28	20	14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3	1	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2	9	11
	상습강제추행	14	7	21
	상습준강제추행	3	0	3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754	20	774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1	0	11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79	2	181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204	4	208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95	5	200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1	0	41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413	7	42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45	6	151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90	5	19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9	1	2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5	3	58
	성폭력범죄(특수강간)	501	13	514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54	13	367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52	0	52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126	0	12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4	0	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954	39	993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841	259	1,100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24	14	38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09	44	153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43	14	5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56	7	63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10	19	2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1	2	3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509	70	579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482	82	56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등)	194	49	24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301	104	405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155	55	210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53	13	6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36	16	5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501	60	56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제추행)	16	18	3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유사성행위)	2	8	10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피보호자간음)	7	4	11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92	4	96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제추행)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유사강간)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준강간)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준강제추행)	6	10	16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1,191	83	1,274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19	59	78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유사강간)	2	12	14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간)	9	22	3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21	45	66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유사강간)	1	3	4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319	61	380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409	86	495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교사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41	19	60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91	19	11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1,210	131	1,34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등)	345	16	36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강제추행)	2	12	1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유사강간)	0	3	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195	37	232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556	116	67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52	5	57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3,259	157	3,416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상해)	22	16	38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치상)	39	17	56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1,645	572	2,217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181	112	29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교사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150	70	220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81	53	13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교사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50	10	60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12	9	2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328	67	39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교사	2	0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제추행)	20	41	6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유사성행위)	2	6	8
	유사강간	105	88	193
	유사강간상해	7	8	15
	유사강간치상	19	11	30
	준강간	807	231	1,038
	준강간교사	1	0	1
	준강간상해	3	3	6
	준강간치상	83	16	99
	준강제추행	1,530	480	2,010
	준강제추행상해	3	0	3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8	3	21
	준유사강간	53	51	104
	준유사강간상해	0	1	1
	준유사강간치상	0	3	3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394	0	394
	특가법(강도강간)	1	0	1
	전체	36,293	7,603	43,896
강도범죄	강도	721	81	802
	강도교사	2	0	2
	강도살인	67	0	67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강도상해	3,174	322	3,496
	강도상해교사	3	0	3
	강도치사	22	1	23
	강도치상	256	30	286
	준강도	413	67	480
	준강도교사	0	1	1
	준특수강도	67	4	71
	특가법(강도)	38	4	42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62	7	69
	특강법(특수강도)	2	0	2
	특수강도	2,690	315	3,005
	전체	7,517	832	8,349
횡령·배임 범죄	배임	2,578	338	2,916
	배임교사	1	0	1
	업무상배임	3,242	479	3,721
	업무상배임교사	1	0	1
	업무상횡령	13,471	1,931	15,402
	업무상횡령교사	1	0	1
	특경가법(배임)	1,570	181	1,751
	특경가법(배임)교사	1	0	1
	특경가법(횡령)	2,212	270	2,482
	특경가법(횡령)교사	1	0	1
	횡령	12,183	1,964	14,147
	횡령교사	2	0	2
	전체	35,263	5,163	40,426
위증범죄	국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5	1	6
	모해위증	91	11	102
	모해위증교사	4	0	4
	위증	6,441	923	7,364
	위증교사	897	108	1,005
	전체	7,438	1,043	8,481
무고범죄	무고	9,165	1,210	10,375
	무고교사	48	17	65
	특가법(무고)	37	0	37
	특가법(무고)교사	1	0	1
	전체	9,251	1,227	10,478
총 계		106,128	17,367	123,495

나. 제2기 대상범죄(2011. 7. 1. ~ 2015. 11. 30.)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약취·유인· 인신매매 범죄	간음약취	7	0	7
	간음유인	11	10	21
	미성년자약취	55	7	62
	미성년자유인	32	8	40
	성매매약취	4	11	15
	성매매유인	0	5	5
	성매매인신매매	2	0	2
	영리약취	7	2	9
	영리유인	44	8	52
	인신매매	0	1	1
	추행유인	4	0	4
	특가법(약취·유인)	25	2	27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59	0	59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교사	1	0	1
	전체	251	54	305
사기범죄	사기	129,250	37,583	166,833
	사기교사	5	1	6
	상습사기	449	100	549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3	3	6
	준사기	101	35	136
	컴퓨터등사용사기	1,634	779	2,413
	특경가법(사기)	3,174	1,058	4,232
	전체	134,616	39,559	174,175
절도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107	39	146
	산림보호법위반	171	57	2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730	211	9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교사	1	1	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0	29	29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	0	3	3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0	26	26
	상습절도	22	192	214
	상습특수절도	5	59	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991	773	2,7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3	3	6
	야간방실침입절도	180	39	219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야간선박침입절도	7	2	9
	야간주거침입절도	1,244	380	1,624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1	0	1
	절도	23,345	6,489	29,834
	절도교사	66	17	83
	특가법(산림)	122	46	168
	특가법(절도)	7,326	1,862	9,188
	특수절도	11,527	2,954	14,481
	특수절도교사	34	10	44
	전체	46,882	13,192	60,074
공문서범죄	공문서변조	367	66	433
	공문서변조교사	2	0	2
	공문서부정행사	1,235	256	1,491
	공문서부정행사교사	11	0	11
	공문서위조	1,054	183	1,237
	공문서위조교사	6	2	8
	공전자기록등변작	2	0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564	331	1,895
	공전자기록등위작	48	22	70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2	0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548	124	672
	변조공문서행사	18	1	19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79	1	80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36	0	36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2	4	6
	위조공문서행사	133	19	152
	자격모용공문서작성	1	0	1
	허위공문서작성	173	46	219
	허위공문서작성교사	1	0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9	2	11
	전체	5,291	1,057	6,348
사문서범죄	변조사문서행사	224	38	262
	사도화변조	1	0	1
	사도화위조	2	0	2
	사문서변조	219	52	271
	사문서변조교사	1	0	1
	사문서부정행사	13	6	19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사문서위조	4,982	1,257	6,239
	사문서위조교사	16	4	20
	사전자기기록등변작	10	2	12
	사전자기기록등위작	63	24	87
	사전자기기록등위작교사	3	0	3
	위작사전자기기록등행사	3	3	6
	위조사문서행사	316	38	35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83	49	23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0	0	10
	허위작성진단서행사	9	13	22
	허위진단서작성	34	6	40
	허위진단서작성교사	2	0	2
	전체	6,091	1,492	7,583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20,355	7,383	27,738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공용건조물파괴	4	0	4
	공용물건무효	3	0	3
	공용물건손상	1,746	281	2,027
	공용물건은닉	5	0	5
	공용서류무효	36	6	42
	공용서류손상	176	23	199
	공용서류은닉	11	0	11
	공용전자기록등손상	4	0	4
	위계공무집행방해	883	298	1,181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3	1	4
	특수공무집행방해	1,138	369	1,50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571	151	722
	특수공용물건손상	29	8	37
	전체	24,965	8,520	33,485
식품·보건 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517	146	663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6	0	1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2,058	485	2,54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6	0	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46	10	5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889	131	1,02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교사	1	0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33	10	43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3	0	3
	식품위생법위반	5,507	1,485	6,992
	식품위생법위반교사	4	0	4
	약사법위반	1,336	390	1,726
	약사법위반교사	0	2	2
	의료법위반	2,630	613	3,243
	의료법위반교사	8	12	20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5	1	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780	209	98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교사	1	0	1
	화장품법위반	77	22	99
	전체	13,917	3,516	17,433
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985	483	2,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67	46	2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1,196	3,426	14,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사	0	1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130	25	1,155
	특가법(마약)	2	5	7
	특가법(향정)	51	2	53
	전체	14,531	3,988	18,519
총 계		246,544	71,378	317,922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는 2014. 10. 1. 이후로 약취·유인범죄에서 명칭이 변경됨

다. 제3기 대상범죄(2012. 7. 1. ~ 2015. 11. 30.)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증권·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836	278	1,11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69	28	97
	증권거래법위반	84	12	96
	특경가법(수재등)	109	62	171
	특경가법(알선수재)	277	131	408
	특경가법(증재등)	89	46	135
	전체	1,464	557	2,021
지식재산권 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57	17	7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등)	5	7	1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	184	65	249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1	0	11
	상표법위반	2,089	780	2,869
	실용신안법위반	18	3	21
	저작권법위반	1,535	453	1,988
	특허법위반	37	17	54
	전체	3,936	1,342	5,278
폭력범죄	상습상해	2	8	10
	상습존속상해	0	1	1
	상습존속폭행	2	1	3
	상습특수폭행	0	1	1
	상습특수협박	0	1	1
	상습폭행	5	10	15
	상습협박	1	0	1
	상해	39,694	11,937	51,631
	상해교사	6	3	9
	상해치사	214	68	282
	존속상해	237	75	312
	존속상해치사	16	12	28
	존속중상해	2	0	2
	존속폭행	75	27	102
	존속폭행치사	6	1	7
	존속폭행치상	4	1	5
	존속협박	20	8	28
	중상해	120	49	169
	특가법(보복범죄등)	47	0	47
	특가법(보복상해등)	108	57	165
	특가법(보복상해등)교사	2	0	2
	특가법(보복폭행등)	88	56	144
	특가법(보복협박등)	185	140	325
	특가법(운전자폭행등)	2,000	699	2,699
	특수존속폭행	0	3	3
	특수존속협박	1	3	4
	특수폭행	133	276	409
	특수폭행치사	1	0	1
	특수폭행치상	5	1	6
	특수협박	188	414	602
	폭처법(공동상해)	9,782	2,751	12,533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폭처법(공동상해)교사	4	2	6
	폭처법(공동존속상해)	15	6	21
	폭처법(공동폭행)	2,577	940	3,517
	폭처법(공동폭행)교사	6	0	6
	폭처법(공동협박)	305	153	458
	폭처법(공동협박)교사	1	0	1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4	8	12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11	0	11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11	0	11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상해)	2	0	2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폭행)	1	0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40	4	44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12	5	17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12	0	12
	폭처법(상습상해)	201	67	268
	폭처법(상습존속상해)	9	1	10
	폭처법(상습존속폭행)	8	11	19
	폭처법(상습존속협박)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상해)	11	12	23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상해)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협박)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폭행)	3	6	9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협박)	6	1	7
	폭처법(상습폭행)	182	75	257
	폭처법(상습협박)	30	18	48
	폭처법(야간·공동상해)	26	6	32
	폭처법(야간·공동폭행)	2	0	2
	폭처법(야간집단·흥기등상해)	0	1	1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13,668	5,020	18,688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13	3	16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76	31	107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14	7	21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42	21	63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3,309	1,150	4,459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교사	3	1	4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4,109	1,675	5,784
	폭행	17,077	6,600	23,677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폭행교사	1	0	1
	폭행치사	179	58	237
	폭행치상	589	227	816
	협박	2,243	968	3,211
	협박교사	2	0	2
	전체	97,751	33,680	131,431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6,736	9,145	35,881
	특가법(도주차량)	12,401	4,066	16,467
	특가법(도주차량)교사	3	2	5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7,823	2,451	10,274
	전체	46,963	15,664	62,627
선거범죄	공직선거법위반	2,934	60	2,994
	공직선거법위반교사	1	0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127	5	132
	전체	3,062	65	3,127
조세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2,279	1,251	3,530
	지방세기본법위반	16	4	20
	특가법(조세)	118	60	178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417	179	596
	전체	2,830	1,494	4,324
공갈범죄	공갈	684	360	1,044
	상습공갈	0	2	2
	특경가법(공갈)	19	10	29
	폭처법(공동공갈)	802	465	1,267
	폭처법(공동공갈)교사	2	1	3
	폭처법(상습공갈)	45	37	82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공갈)	1	0	1
	폭처법(야간·공동공갈)	1	1	2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	44	24	68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교사	1	0	1
	전체	1,599	900	2,499
방화범죄	공용건조물방화	7	5	12
	공용자동차방화	1	0	1
	공익건조물방화	2	0	2
	일반건조물방화	69	43	112
	일반건조물방화교사	1	0	1
	일반물건방화	72	57	129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일반물건방화교사	0	1	1
	일반자동차방화	51	25	76
	현존건조물방화	28	17	45
	현존건조물방화치상	8	5	13
	현존건조물방화치상교사	1	0	1
	현존자동차방화치사	1	0	1
	현주건조물방화	198	110	308
	현주건조물방화치사	4	3	7
	현주건조물방화치상	25	14	39
	현주선박방화	0	1	1
	전체	468	281	749
총 계		158,073	53,983	212,056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접수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접수건수임.

라. 제4기 대상범죄(2014. 7. 1. ~ 2015. 11. 30.)

범죄	세부죄명	2014.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배임수증재 범죄	배임수재	230	318	548
	배임증재	168	174	342
	전체	398	492	890
변호사법 위반범죄	변호사법위반	177	528	705
	전체	177	528	705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75	131	2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5	13	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933	2,498	4,431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요행위등)	15	56	71
	아동·청소년성보호법(매매)	0	1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등)	138	154	29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알선영업행위등)	56	100	156
	전체	2,222	2,953	5,175
체포·감금· 유기·학대 범죄	감금	16	67	83
	감금치상	7	33	40
	노인복지법위반	3	10	13
	아동복지법위반	57	156	21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0	4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	8	10

범죄	세부죄명	2014.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0	1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66	6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0	4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	0	1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등의아동학대)	0	26	2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학대중상해)	0	1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0	2	2
	영아유기	3	6	9
	영아유기치사	0	1	1
	유기	0	2	2
	유기치사	2	7	9
	존속감금	1	2	3
	존속유기	0	1	1
	존속체포치상교사	2	0	2
	중감금	3	0	3
	중감금치상	2	7	9
	청소년보호법위반	249	787	1,036
	체포	0	2	2
	특수감금	0	5	5
	특수감금치상	0	1	1
	폭처법(공동감금)	32	89	121
	폭처법(공동존속감금)	0	4	4
	폭처법(공동체포)	0	1	1
	폭처법(집단·흥기등감금)	1	27	28
	학대	0	1	1
	전체	381	1,322	1,703
장물범죄	상습장물알선	-	1	1
	상습장물취득	-	13	13
	장물보관	-	12	12
	장물알선	-	33	33
	장물양도	-	5	5
	장물운반	-	6	6
	장물취득	-	177	177
	특가법(장물)	-	2	2
	전체	-	249	249
권리행사 방해범죄	강요	-	14	14

범죄	세부죄명	2014.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강제집행면탈	-	113	113
	권리행사방해	-	293	293
	권리행사방해교사	-	1	1
	폭처법(공동강요)	-	13	13
	폭처법(집단·흥기등강요)	-	4	4
	전체	-	438	438
업무방해 범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129	129
	경매방해	-	58	58
	업무방해	-	2,250	2,250
	업무방해교사	-	4	4
	입찰방해	-	46	46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	2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5	5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교사	-	1	1
	전체	-	2,495	2,495
손괴범죄	문서손괴	-	13	13
	재물손괴	-	766	766
	재물손괴교사	-	2	2
	재물손괴치상	-	2	2
	전자기록등손괴	-	2	2
	특수재물손괴	-	47	47
	폭처법(공동재물손괴등)	-	81	8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재물손괴등)	-	1	1
	폭처법(상습재물손괴등)	-	4	4
	폭처법(집단·흥기등재물손괴등)	-	152	152
	전체	-	1,070	1,070
사행성· 게임물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1,386	1,386
	경륜경정법위반	-	2	2
	관광진흥법위반	-	5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110	1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215	215
	도박개장	-	97	97
	도박공간개설	-	56	56
	도박장소개설	-	93	9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	153	153
	한국마사회법위반	-	90	9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	5	5

범죄	세부죄명	2014.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전체	-	2,212	2,212
총 계		3,178	11,759	14,937

※ 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는 2014. 10. 1. 이후 접수건수임.

2.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는 2015. 7. 1. 이후 접수건수임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건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2. 처리 현황

○ 제1기, 제2기, 제3기 및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2015. 11. 30.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범죄군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5. 11. 3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09. 7. ~ 2014. 12.	살인범죄	수	3,877	3	0	3,880
		비율	99.9%	0.1%	0.0%	100.0%
	뇌물범죄	수	2,790	1,741	84	4,615
		비율	60.5%	37.7%	1.8%	100.0%
	성범죄	수	21,387	7,059	1,950	30,396
		비율	70.4%	23.2%	6.4%	100.0%
	강도범죄	수	6,723	48	0	6,771
		비율	99.3%	0.7%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4,662	20,510	5,749	30,921
		비율	15.1%	66.3%	18.6%	100.0%
	위증범죄	수	145	5,141	1,401	6,687
		비율	2.2%	76.9%	21.0%	100.0%
	무고범죄	수	284	5,820	1,870	7,974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전체	비율	3.6%	73.0%	23.5%	100.0%
		수	39,868	40,322	11,054	91,244
		비율	43.7%	44.2%	12.1%	100.0%
2015. 1. ~ 2015. 11.	살인범죄	수	619	0	0	619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범죄	수	575	380	14	969
		비율	59.3%	39.2%	1.4%	100.0%
	성범죄	수	4,164	3,424	30	7,618
		비율	54.7%	44.9%	0.4%	100.0%
	강도범죄	수	755	6	0	761
		비율	99.2%	0.8%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757	3,874	918	5,549
		비율	13.6%	69.8%	16.5%	100.0%
	위증범죄	수	12	712	376	1,100
		비율	1.1%	64.7%	34.2%	100.0%
	무고범죄	수	21	844	329	1,194
		비율	1.8%	70.7%	27.6%	100.0%
	전체	수	6,903	9,240	1,667	17,810
		비율	38.8%	51.9%	9.4%	100.0%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5. 11. 3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1. 7. ~ 2014. 12.	약취·유인범죄	수	169	63	1	233
		비율	72.5%	27.0%	0.4%	100.0%
	사기범죄	수	6,989	84,943	23,610	115,542
		비율	6.0%	73.5%	20.4%	100.0%
	절도범죄	수	4,471	32,190	8,050	44,711
		비율	10.0%	72.0%	18.0%	100.0%
	공문서범죄	수	293	2,856	1,150	4,299
		비율	6.8%	66.4%	26.8%	100.0%
	사문서범죄	수	268	4,064	1,876	6,208
		비율	4.3%	65.5%	30.2%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1,166	13,340	7,539	22,045
		비율	5.3%	60.5%	34.2%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식품·보건범죄	수	288	3,693	7,998	11,979
		비율	2.4%	30.8%	66.8%	100.0%
	마약범죄	수	2,028	11,090	226	13,344
		비율	15.2%	83.1%	1.7%	100.0%
	전체	수	15,672	152,239	50,450	218,361
		비율	7.2%	69.7%	23.1%	100.0%
2015. 1. ~ 2015. 11.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수	42	22	0	64
		비율	65.6%	34.4%	0.0%	100.0%
	사기범죄	수	2,303	31,274	5,385	38,962
		비율	5.9%	80.3%	13.8%	100.0%
	절도범죄	수	631	9,090	2,009	11,730
		비율	5.4%	77.5%	17.1%	100.0%
	공문서범죄	수	65	953	244	1,262
		비율	5.2%	75.5%	19.3%	100.0%
	사문서범죄	수	68	1,389	532	1,989
		비율	3.4%	69.8%	26.7%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278	8,854	669	9,801
		비율	2.8%	90.3%	6.8%	100.0%
	식품·보건범죄	수	84	1,366	2,299	3,749
		비율	2.2%	36.4%	61.3%	100.0%
	마약범죄	수	480	3,283	61	3,824
		비율	12.6%	85.9%	1.6%	100.0%
	전체	수	3,951	56,231	11,199	71,381
		비율	5.5%	78.8%	15.7%	100.0%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는 2014. 10. 1. 이후로 약취·유인범죄에서 명칭이 변경됨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5. 11. 3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2. 7. ~ 2014. 12.	증권·금융범죄	수	428	511	80	1,019
		비율	42.0%	50.1%	7.9%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21	1,342	2,145	3,508
		비율	0.6%	38.3%	61.1%	100.0%
	폭력범죄	수	3,899	44,142	39,242	87,283
		비율	4.5%	50.6%	45.0%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교통범죄	수	1,519	29,237	12,423	43,179
		비율	3.5%	67.7%	28.8%	100.0%
	선거범죄	수	2,355	66	0	2,421
		비율	97.3%	2.7%	0.0%	100.0%
	조세범죄	수	495	1,032	485	2,012
		비율	24.6%	51.3%	24.1%	100.0%
	공갈범죄	수	105	1,007	179	1,291
		비율	8.1%	78.0%	13.9%	100.0%
	방화범죄	수	444	8	3	455
		비율	97.6%	1.8%	0.7%	100.0%
2015. 1. ~ 2015. 11.	전체	수	9,266	77,345	54,557	141,168
		비율	6.6%	54.8%	38.6%	100.0%
	증권·금융범죄	수	180	342	38	560
		비율	32.1%	61.1%	6.8%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5	540	783	1,328
		비율	0.4%	40.7%	59.0%	100.0%
	폭력범죄	수	1,641	20,964	12,255	34,860
		비율	4.7%	60.1%	35.2%	100.0%
	교통범죄	수	75	12,493	3,923	16,491
		비율	0.5%	75.8%	23.8%	100.0%
	선거범죄	수	724	3	0	727
		비율	99.6%	0.4%	0.0%	100.0%
	조세범죄	수	336	1,004	259	1,599
		비율	21.0%	62.8%	16.2%	100.0%
	공갈범죄	수	110	899	141	1,150
		비율	9.6%	78.2%	12.3%	100.0%
	방화범죄	수	320	11	2	333
		비율	96.1%	3.3%	0.6%	100.0%
	전체	수	3,391	36,256	17,401	57,048
		비율	5.9%	63.6%	30.5%	100.0%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처리건수임.

(4)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4. 7. 1. ~ 2015. 11. 3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4. 7. ~ 2014. 12.	배임수증재범죄	수	56	140	10	206
		비율	27.2%	68.0%	4.9%	100.0%
	변호사법위반범죄	수	15	68	7	90
		비율	16.7%	75.6%	7.8%	100.0%
	성매매범죄	수	90	818	235	1,143
		비율	7.9%	71.6%	20.6%	100.0%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수	2	15	99	116
		비율	1.7%	12.9%	85.3%	100.0%
	전체	수	163	1,041	351	1,555
		비율	10.5%	66.9%	22.6%	100.0%
2015. 1. ~ 2015. 11.	배임수증재범죄	수	212	277	32	521
		비율	40.7%	53.2%	6.1%	100.0%
	변호사법위반범죄	수	80	251	36	367
		비율	21.8%	68.4%	9.8%	100.0%
	성매매범죄	수	341	2,596	533	3,470
		비율	9.8%	74.8%	15.4%	100.0%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수	90	414	776	1,280
		비율	7.0%	32.3%	60.6%	100.0%
	장물범죄	수	1	63	37	101
		비율	1.0%	62.4%	36.6%	100.0%
	권리행사방해범죄	수	3	81	59	143
		비율	2.1%	56.6%	41.3%	100.0%
	업무방해범죄	수	28	541	710	1,279
		비율	2.2%	42.3%	55.5%	100.0%
	손괴범죄	수	19	216	323	558
		비율	3.4%	38.7%	57.9%	100.0%
	사행성·게임물범죄	수	3	770	284	1,057
		비율	0.3%	72.8%	26.9%	100.0%
	전체	수	777	5,209	2,790	8,776
		비율	8.9%	59.4%	31.8%	100.0%

※ 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는 2014. 10. 1. 이후 처리건수임.

2.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는 2015. 7. 1. 이후 처리건수임

나.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5. 11. 30.)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살인범죄	강간살인	5	0	5
	강도살인	63	7	70
	강도살인미수	24	2	26
	살인	1,494	238	1,732
	살인교사	4	1	5
	살인미수	2,025	317	2,342
	살인미수교사	2	0	2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33	7	40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미수	1	0	1
	존속살해	151	25	176
	존속살해미수	71	22	93
	특가법(보복범죄등)	2	0	2
	특가법(보복살인등)	1	0	1
	폭처법(단체등의살인)	3	0	3
	전체	3,880	619	4,499
뇌물범죄	뇌물공여	2,152	432	2,584
	뇌물공여교사	3	0	3
	뇌물공여약속	1	1	2
	뇌물공여의사표시	5	12	17
	뇌물수수	1,451	325	1,776
	뇌물요구	3	3	6
	부정처사후수뢰	83	3	86
	사전뇌물수수	2	0	2
	수뢰후부정처사	101	8	109
	제3자뇌물교부	113	36	149
	제3자뇌물취득	124	40	164
	특가법(뇌물)	576	109	685
	특가법(뇌물)교사	1	0	1
	전체	4,615	969	5,584
성범죄	강간	983	325	1,308
	강간미수상해	0	1	1
	강간살인	3	0	3
	강간상해	816	85	901
	강간치사	7	0	7
	강간치상	1,288	125	1,413
	강도강간	81	5	86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강제추행	8,060	3,201	11,261
	강제추행상해	198	32	230
	강제추행치상	568	71	639
	미성년자간음	7	0	7
	미성년자의제강간	90	21	111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10	1	1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87	20	107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2	0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2	6	8
	미성년자추행	1	0	1
	상습강제추행	5	9	14
	상습준강제추행	2	0	2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678	11	689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0	4	4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0	1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	1	2
	성폭력범죄(13세미만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8	0	8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61	4	165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164	5	169
	성폭력범죄(장애인강간)	2	0	2
	성폭력범죄(장애인강제추행)	1	0	1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74	5	179
	성폭력범죄(장애인위계등간음)	1	1	2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1	0	41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385	12	39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31	3	134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58	10	168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7	2	19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37	3	40
	성폭력범죄(특수강간)	376	10	386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42	6	348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40	0	40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76	0	7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4	0	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75	31	906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717	287	1,00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27	12	3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02	55	15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39	18	5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63	4	6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3	18	21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443	59	50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사)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416	54	470
	성폭력범죄특례법(위계등간음)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위계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간음)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가간)	145	54	199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가제추행)	241	118	359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322	28	350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158	63	22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강간)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47	15	6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력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32	18	50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가간등)	121	26	14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가제추행)	4	23	2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가준유사성행위)	0	8	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가피보호자간음)	7	2	9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78	2	80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제추행)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유사강간)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가간)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가제추행)	3	11	14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가준유사강간)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1,132	95	1,227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8	54	62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유사강간)	1	8	9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가간)	5	16	2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가제추행)	8	41	49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유사강간)	1	1	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265	63	328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383	110	493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교사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41	11	5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90	32	12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956	105	1,06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350	23	37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제추행)	0	14	1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유사강간)	0	4	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173	34	207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410	106	516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54	7	61
	아동·청소년성보호법	4	0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0	1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3,017	140	3,157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상해)	16	14	30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치상)	33	12	45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1,415	600	2,01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195	100	29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교사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155	69	22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강간)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68	49	117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교사	0	1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51	11	6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위계등추행)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9	9	1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362	80	44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교사	2	0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제추행)	4	33	37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유사성행위)	0	8	8
	유사강간	83	75	158
	유사강간상해	9	5	14
	유사강간치사	0	1	1
	유사강간치상	13	13	26
	준강간	644	236	880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준강간교사	1	0	1
	준강간상해	3	2	5
	준강간치상	74	18	92
	준강제추행	1,234	474	1,708
	준강제추행상해	3	0	3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8	1	19
	준유사강간	46	44	90
	준유사강간상해	0	1	1
	준유사강간치사	1	0	1
	준유사강간치상	2	1	3
	청소년성보호법	1	0	1
	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4	0	4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188	2	190
	전체	30,396	7,618	38,014
강도범죄	강도	675	81	756
	강도교사	1	0	1
	강도살인	63	0	63
	강도상해	2,662	271	2,933
	강도상해교사	2	0	2
	강도치사	31	3	34
	강도치상	223	24	247
	상습강도	0	1	1
	준강도	405	46	451
	준특수강도	67	4	71
	특가법(강도)	46	1	47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64	5	69
	특강법(특수강도)	1	0	1
	특수강도	2,531	325	2,856
	전체	6,771	761	7,532
횡령·배임 범죄	배임	2,224	376	2,600
	배임교사	3	0	3
	업무상배임	2,453	480	2,933
	업무상배임교사	2	1	3
	업무상횡령	12,018	2,138	14,156
	업무상횡령교사	0	1	1
	특경가법(배임)	1,322	216	1,538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특경가법(횡령)	2,128	281	2,409
	특경가법(횡령)교사	1	0	1
	횡령	10,769	2,054	12,823
	횡령교사	1	2	3
	전체	30,921	5,549	36,470
위증범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0	1	1
	모해위증	91	11	102
	모해위증교사	5	0	5
	위증	5,646	964	6,610
	위증교사	945	124	1,069
	전체	6,687	1,100	7,787
무고범죄	무고	7,886	1,183	9,069
	무고교사	50	8	58
	특가법(무고)	37	3	40
	특가법(무고)교사	1	0	1
	전체	7,974	1,194	9,168
총 계		91,244	17,810	109,054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5. 11. 30.)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약취·유인· 인신매매 범죄	간음약취	4	3	7
	간음유인	8	9	17
	국외이송약취	0	1	1
	미성년자약취	47	15	62
	미성년자유인	32	9	41
	성매매약취	0	8	8
	성매매유인	0	1	1
	성매매인신매매	1	0	1
	약취유인	0	1	1
	영리약취	6	1	7
	영리유인	20	13	33
	추행유인	3	2	5
	특가법(약취·유인)	25	1	26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87	0	87
	전체	233	64	297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사기범죄	사기	109,940	37,407	147,347
	사기교사	6	1	7
	상습사기	418	82	500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3	3	6
	준사기	75	47	122
	컴퓨터등사용사기	2,005	611	2,616
	특경가법(사기)	3,095	811	3,906
	전체	115,542	38,962	154,504
절도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89	27	116
	산림보호법위반	132	55	1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583	228	8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교사	0	1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0	4	4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0	4	4
	상습절도	11	15	26
	상습특수절도	0	8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796	645	2,4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2	3	5
	야간방실침입절도	184	45	229
	야간선박침입절도	5	2	7
	야간주거물침입절도	0	1	1
	야간주거침입절도	1,360	399	1,759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1	0	1
	절도	20,819	6,876	27,695
	절도교사	58	15	73
	주거침입절도	0	1	1
	특가법(산림)	95	36	131
	특가법(상습절도)	3	0	3
	특가법(절도)	7,610	559	8,169
	특수절도	11,935	2,794	14,729
	특수절도교사	28	12	40
	전체	44,711	11,730	56,441
공문서범죄	공도화변조	1	0	1
	공문서변조	281	126	407
	공문서변조교사	2	0	2
	공문서부정행사	742	211	953
	공문서부정행사교사	8	0	8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공문서위조	933	277	1,210
	공문서위조교사	8	1	9
	공전자기록등변작	1	1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532	397	1,9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1	0	1
	공전자기록등위작	48	17	65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2	0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484	143	627
	변조공문서행사	4	1	5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5	0	5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4	0	4
	위조공문서행사	69	37	106
	자격모용공문서작성	3	0	3
	허위공문서작성	167	51	218
	허위공문서작성교사	2	0	2
	허위공문서행사	1	0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0	1
	전체	4,299	1,262	5,561
사문서 범죄	변조사문서행사	22	9	31
	사문서변조	317	105	422
	사문서변조교사	1	0	1
	사문서부정행사	6	1	7
	사문서위조	5,374	1,738	7,112
	사문서위조교사	14	5	19
	사문서위조행사	3	0	3
	사전자기기록등변작	8	2	10
	사전자기기록등위작	65	24	89
	사전자기기록등위작교사	2	1	3
	위작사전자기기록등행사	1	0	1
	위조사문서행사	182	36	218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78	47	225
	허위작성진단서행사	3	0	3
	허위진단서작성	30	21	51
	허위진단서작성교사	2	0	2
	전체	6,208	1,989	8,197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17,512	8,366	25,878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공용건물손상	1	0	1
	공용건조물파괴	3	0	3
	공용물건무효	3	0	3
	공용물건손상	1,781	400	2,181
	공용물건손상교사	2	0	2
	공용물건은닉	4	0	4
	공용서류무효	36	4	40
	공용서류손상	170	42	212
	공용서류은닉	12	0	12
	공용전자기록등손상	1	2	3
	위계공무집행방해	832	301	1,133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3	0	3
	특수공무집행방해	999	501	1,5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653	176	829
	특수공용건조물파괴	1	0	1
	특수공용물건손상	31	8	39
	특수공용물건손상치상	0	1	1
	전체	22,045	9,801	31,846
식품·보건 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380	165	545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0	0	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934	473	2,407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6	2	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38	16	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834	156	9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22	5	27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2	0	2
	식품위생법위반	4,832	1,477	6,309
	식품위생법위반교사	4	0	4
	약사법위반	1,047	466	1,513
	의료법위반	2,135	713	2,848
	의료법위반교사	10	10	20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4	0	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643	253	89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교사	1	0	1
	화장품법위반	77	13	90
	전체	11,979	3,749	15,728
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637	360	1,997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42	57	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0,456	3,343	13,7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사	0	1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075	58	1,133
	특가법(마약)	3	2	5
	특가법(향정)	31	3	34
	전체	13,344	3,824	17,168
총 계		218,361	71,381	289,742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는 2014. 10. 1. 이후로 약취·유인범죄에서 명칭이 변경됨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5. 11. 30.)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증권·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562	324	886
	조세범처벌법위반	0	1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7	27	44
	증권거래법위반	58	24	82
	특경가법(수재등)	74	55	129
	특경가법(알선수재)	239	97	336
	특경가법(증재등)	69	32	101
	전체	1,019	560	1,579
지식재산권 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43	11	5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6	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비밀누설등)	3	0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1	0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77	34	11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보호등)	10	0	10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8	10
	상표법위반	1,973	763	2,736
	실용신안법위반	15	3	18
	저작권법위반	1,347	489	1,836
	특허법위반	35	14	49
	전체	3,508	1,328	4,836
	상습상해	3	6	9
폭력범죄	상습준속폭행	1	3	4
	상습폭행	3	5	8
	상습협박	2	0	2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상해	34,726	12,800	47,526
	상해교사	4	5	9
	상해치사	203	71	274
	존속상해	238	85	323
	존속상해치사	16	11	27
	존속중상해	3	0	3
	존속폭행	67	25	92
	존속폭행치사	3	4	7
	존속폭행치상	7	3	10
	존속협박	14	7	21
	중상해	106	41	147
	특가법(보복범죄등)	173	0	173
	특가법(보복상해등)	92	59	151
	특가법(보복상해등)교사	0	3	3
	특가법(보복폭행등)	80	56	136
	특가법(보복협박등)	185	157	342
	특가법(운전자폭행등)	1,952	606	2,558
	특수존속폭행	0	3	3
	특수존속협박	1	2	3
	특수폭행	143	346	489
	특수폭행치상	6	0	6
	특수협박	176	490	666
	폭처법(공동상해)	9,066	2,819	11,885
	폭처법(공동상해)교사	8	1	9
	폭처법(공동존속상해)	11	5	16
	폭처법(공동폭행)	2,223	833	3,056
	폭처법(공동폭행)교사	6	0	6
	폭처법(공동협박)	253	156	409
	폭처법(공동협박)교사	1	1	2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4	0	4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7	0	7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8	1	9
	폭처법(단체등의구성활동)	0	1	1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상해)	1	0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31	4	35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13	0	13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10	1	11
	폭처법(상습상해)	190	66	256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폭처법(상습존속상해)	5	1	6
	폭처법(상습존속폭행)	10	8	18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상해)	18	14	32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상해)	2	0	2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폭행)	0	1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폭행)	5	3	8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협박)	6	1	7
	폭처법(상습폭행)	169	74	243
	폭처법(상습협박)	31	16	47
	폭처법(야간·공동상해)	25	1	26
	폭처법(야간·공동폭행)	0	1	1
	폭처법(야간·공동협박)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12,895	5,385	18,280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7	4	11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87	39	126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21	8	29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57	27	84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3,009	1,152	4,161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교사	4	0	4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4,205	1,657	5,862
	폭처법(특수협박)	0	1	1
	폭행	14,061	6,513	20,574
	폭행교사	3	0	3
	폭행치사	160	51	211
	폭행치상	556	258	814
	협박	1,907	969	2,876
	협박교사	3	0	3
	전체	87,283	34,860	122,143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4,521	9,657	34,178
	특가법(도주차량)	11,300	4,260	15,560
	특가법(도주차량)교사	2	2	4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7,356	2,572	9,928
	전체	43,179	16,491	59,670
선거범죄	공직선거법위반	2,350	655	3,005
	공직선거법위반교사	0	1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71	71	142
	전체	2,421	727	3,148
조세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1,645	1,349	2,994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지방세법위반	2	0	2
	특가법(조세)	74	66	140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91	184	475
	전체	2,012	1,599	3,611
공갈범죄	공갈	516	492	1,008
	상습공갈	2	2	4
	특경가법(공갈)	13	9	22
	폭처법(공동공갈)	663	548	1,211
	폭처법(공동공갈)교사	3	1	4
	폭처법(상습공갈)	41	65	106
	폭처법(야간·공동공갈)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	51	33	84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교사	1	0	1
	전체	1,291	1,150	2,441
방화범죄	공용건조물방화	5	5	10
	공용자동차방화	2	0	2
	공익건조물방화	2	0	2
	산림보호법위반	4	6	10
	일반건조물방화	60	50	110
	일반건조물방화교사	2	1	3
	일반물건방화	63	54	117
	일반물건방화교사	0	1	1
	일반자동차방화	57	31	88
	현존건조물방화	28	18	46
	현존건조물방화치사	3	1	4
	현존건조물방화치상	8	6	14
	현존건조물방화치상교사	1	0	1
	현존자동차방화	1	0	1
	현존자동차방화치사	1	0	1
	현주건조물방화	191	142	333
	현주건조물방화치사	8	4	1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18	14	32
	현주자동차방화	1	0	1
	전체	455	333	788
총 계		141,168	57,048	198,216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처리건수임.

(4)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4. 7. 1. ~ 2015. 11. 30.)

범죄군	세부죄명	2014.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배임수증재 범죄	배임수재	116	340	456
	배임증재	90	181	271
	전체	206	521	727
변호사법 위반범죄	변호사법위반	90	367	457
	전체	90	367	457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37	141	1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2	19	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004	2,942	3,946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요행위등)	4	60	6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등)	74	192	266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알선영업행위등)	22	115	137
	청소년성보호법위반	0	1	1
	전체	1,143	3,470	4,613
체포·감금· 유기·학대 범죄	감금	3	74	77
	감금치상	1	31	32
	노인복지법위반	0	10	10
	아동복지법위반	4	159	16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0	4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0	2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44	4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0	1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	0	1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등의아동학대)	0	6	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0	2	2
	영아유기	1	4	5
	영아유기치사	0	1	1
	유기	0	1	1
	유기치사	0	8	8
	존속감금	0	3	3
	존속유기	0	1	1
	중감금	0	6	6
	중감금치상	0	7	7
	청소년보호법위반	102	761	863
	체포	0	3	3
	특수감금치상	0	1	1

범죄군	세부죄명	2014.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폭처법(공동감금)	2	101	103
	폭처법(공동체포)	0	1	1
	폭처법(상습감금)	0	1	1
	폭처법(집단·흥기등감금)	2	45	47
	학대	0	1	1
	학대치상	0	1	1
	전체	116	1,280	1,396
장물범죄	상습장물알선	-	1	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	14	14
	장물보관	-	2	2
	장물알선	-	12	12
	장물운반	-	4	4
	장물취득	-	68	68
	전체	-	101	101
권리행사 방해범죄	강요	-	2	2
	강제집행면탈	-	25	25
	권리행사방해	-	112	112
	폭처법(집단·흥기등강요)	-	4	4
	전체	-	143	143
업무방해 범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39	39
	경매방해	-	10	10
	업무방해	-	1,212	1,212
	업무방해교사	-	2	2
	입찰방해	-	16	16
	전체	-	1,279	1,279
손괴범죄	문서손괴	-	5	5
	재물손괴	-	428	428
	재물손괴교사	-	2	2
	재물손괴치상	-	1	1
	전자기록등손괴	-	1	1
	특수손괴	-	13	13
	특수재물손괴	-	41	41
	폭처법(공동재물손괴등)	-	38	38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재물손괴등)	-	1	1
	폭처법(상습재물손괴등)	-	4	4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재물손괴등)	-	1	1
	폭처법(집단·흥기등재물손괴등)	-	23	23

범죄군	세부죄명	2014. 7. ~ 2014. 12.	2015. 1. ~ 2015. 11.	전체
	전체	-	558	558
사행성· 게임물 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616	616
	경륜경정법위반	-	1	1
	관광진흥법위반	-	2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24	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24	24
	도박개장	-	62	62
	도박공간개설	-	79	79
	도박장소개설	-	63	6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	141	141
	한국마사회법위반	-	45	45
	전체	-	1,057	1,057
총 계		1,555	8,776	10,331

※ 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는 2014. 10. 1. 이후 처리건수임.

2.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는 2015. 7. 1. 이후 처리건수임

I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00차	2016. 3. 7. 16:00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결과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내용 검토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내용 검토

Ⅲ. 자문위원 신규 위촉 및 위촉식 개최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방법 이외에도 운영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다양한 직역의 인사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을 비롯한 양형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자문위원단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명망가·전문가로 구성
- 박광민 위원이 2015. 3. 9.자로 임기만료 되고, 전광석 위원이 2016. 1. 5.자로 사임하여 문채규, 윤영미 위원이 2016. 1. 7.자로 각 신규 위촉

2. 자문위원 명단

연번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경 력
1	법 학 계	문채규	1959. 2. 7.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박은정	1952. 10. 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손동권	1952. 11. 30.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4		원혜욱	1962. 7. 28.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윤영미	1963. 12. 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	학 계	오미영	1958. 3. 22.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7		조벽	1956. 11. 14.	동국대 석좌교수
8		홍은희	1955. 7. 5.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9	언론계	김세형	1954. 1. 24.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10		정동식	1958. 1. 25.	경향신문 부사장
11	시민.	김자혜	1951. 11. 1.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12	사회단체	정춘숙	1964. 1. 8.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3. 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 일 시 : 2016. 3. 14.(월) 16: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위촉장 수여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 신규 위촉 자문위원 2인
- 배 석 :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운영지원단장

IV. 2016년도 양형위원회 제6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1. 개요

- 2016. 3. 14.(월) 16:00 ~ 18: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양형위원회 제6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2. 참석 현황

- 위원장, 상임위원, 운영지원단장
- 자문위원 8인(김세형, 문채규, 손동권, 오미영, 원혜옥, 윤영미, 조벽, 정춘숙)

3. 회의 내용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경과 보고 및 주요 내용 설명
- 자문 의견 청취

4. 자문의견 요약

가. 근로기준법위반

- (1) “강제근로·중간착취” 유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

(가) 쟁점

- “강제근로·중간착취” 유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
- 현행 양형기준안은 특별감경인자로 설정

(나) 자문의견

- 감경인자 설정(현행안 유지) 의견
 -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고, 반복적으로 범행할 의사가

없으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노력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야 함

○ 감경인자 미설정 의견

- 근로기준법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근로자는 사용자의 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지위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행한 가해자의 노력이 합의에 준할 정도로 진정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
- 강제근로·근로자폭행은 사용자의 범행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인데, 피해발생 후 금전으로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하여 가해자에게 합의에 준할 정도로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고 감경할 경우, 근로자들의 열악한 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악덕 사업주가 범행 후 금전으로 해결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유형이 양형실무례에서 많은 편이 아닌데, 논란이 많은 양형인자를 특별감경인자로 넣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회복적 사법의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회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함

(2) “임금 등 미지급” 유형에서 ‘미지급 근로자 수’ 및 ‘미지급 기간’을 양형인자나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가) 쟁점

- “임금 등 미지급” 유형에서 ‘미지급 근로자 수’ 및 ‘미지급 기간’ 양형인자나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 현행 양형기준안은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나) 자문의견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설정 의견
 - 같은 액수라도 미지급 근로자 수나 미지급 기간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른 것을 고려해야 함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미설정(현행안 유지) 의견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부분에서 반영이 될 수 있음
 - 미지급 근로자 수, 미지급 기간은 이미 양형실무례에서 반영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는 없음

(3)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정의 중 '고용관계에 의한 지시 등을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지 여부

(가) 쟁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정의 중 '고용관계에 의한 지시 등을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지 여부
- 현행 양형기준안은 위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

(나) 자문의견

-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현행안 유지) 의견
 - 없음
- 특별감경인자로 미설정 의견
 -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사유를 감경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라면 형법 제12조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음
 - 사용자 집단 내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큼
 - 실제 사안에서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 상사의 위법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고용관계에 의한 지시라는 이유로 감경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오히려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행위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석유사업법위반

(1)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할지 여부

(가) 쟁점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할지 여부
- 현행 양형기준안은 일반감경인자로 설정

(나) 자문의견

- 일반감경인자 설정(현행안 유지) 의견
 - 없음
- 일반감경인자 미설정 의견
 - 소비자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판매업자라는 지위를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상적인 판매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이 비난의 정도가 더욱 높음
 - 오히려 가중인자로 고려되어야 함
 - 현행 양형기준안처럼 소극적 목적, 부수성, 이익의 규모와 범행횟수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은 여전히 있음

(2)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의 중·소유형 분류를 ‘영업규모’에 따라 분류(일반규모/대규모)하는 방안

(가) 쟁점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의 중·소유형 분류를 ‘영업규모’에 따라 분류(일반규모/대규모)하는 방안
- 현행 양형기준안은 제조량 또는 판매량 등에 따라 분류

(나) 자문의견

- 제조량 또는 판매량 등에 따른 분류(현행안 유지) 의견
 - 영업규모는 구성요건, 범행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고 제조량, 판매량이 본질적인 부분임
 - 마약의 경우,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양도 양형에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가짜석유제품도 제조량이 중요한 부분임
 - 영업규모는 기준을 정하기 어려움
 - 제조량, 판매량만으로 영업규모 추정이 가능함
- 영업규모(일반규모/대규모)에 따른 분류 의견
 - 없음
- 별개의견
 - 판매를 통한 이익금을 기준으로 유형분류를 해야 함

다. 과실치사상범죄

(1)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

(가) 쟁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것인
여부
- 현행양형기준안은 특별감경인자로 설정

(나) 자문의견

-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현행안 유지) 의견
 - 고의범인 살인범죄에서조차 설정되어 있음
 - 고의범에 비하여 과실로 인한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범죄임
 - 과거 15개의 범죄군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평의 관점에서 설정되어야 함
- 특별감경인자로 미설정 의견
 -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권고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로 포함되는 것은 법감정에 부합하지 아니함
(2)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

(가) 쟁점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
- 현행양형기준안은 특별가중인자로 미설정

(나) 자문의견

-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의견
 - 없음
- 특별가중인자로 미설정(현행안 유지) 의견
 - 상상적 경합범의 법이론과 맞지 않음.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 과실범 처벌은 결과반가치보다 주의의무위반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해야 함. 피해자의 수는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우연의 결과를 가중요소로 삼는 것은 맞지 않음
 - 대형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처벌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하자는 의견
 -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가중요소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가능함

5. 향후 계획

- 자문위원 회의는 통상 연 1회 개최(개최 시기는 위원장이 결정)
- 2016. 11. ~ 2017. 1.경 :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통화·유가증권범죄, 대부업법위반, 도주·범인은닉범죄) 및 수정 대상범죄(위증범죄) 양형기준안(수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양형위원회 제7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예정

V.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 기준안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1. 개요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에
따라 대법원, 국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
시한 의견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가. 대상 기준안

- 전문위원단 검토 내용을 기초로 양형위원회 제69차 회의(2015. 12. 9.)에서 의결한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및 제70차 회의(2016. 1. 25.)에서 의결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나. 조회 기간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 2015. 12. 16. ~ 2016. 1. 16.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2016. 2. 2. ~ 2. 29.

다. 회신 기관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31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7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고용노동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참여연대
-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31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4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 31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4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29개(국회 2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7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라. 회신자료

- 별첨1.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 및 별첨2.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와 같음

2.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임금 등 미지급 유형
 - 제3유형 '1억 원 이상'의 가중영역 상한을 2년6월에서 3년으로 상향할 필요 있음
 - ▶ 1억 원 이상 임금 등 미지급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이 2년6월인데, 실제 사례에서 10억 원 이상 임금 미지급의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상한을 3년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 강제근로·중간착취 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다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평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 있음
- ▶ 강제근로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별로 1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만일 피해 근로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이 가중될 것임
- ▶ 그런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게 되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상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권고형의 범위는 2회(특별가중인자 적용에 따른 가중영역 선택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상한의 가중)에 걸쳐 가중될 수 있음
- ▶ 이에 따라 같은 불법 내용을 중복적으로 이중평가하게 될 위험이 있음
- 임금 등 미지급 유형
 - 양형인자
 - ▶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은 사건의 특성상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삭제할 필요 있음
 - 집행유예 기준
 - ▶ ‘피해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일부 피해 회복(긍정적 일반참작사유)’의 경우,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실제 양형 적용사례를 참고하여 일응의 미지급 임금 금액 범위를 특정하여 구체화할 필요 있음

나. 대한변호사협회

○ 서론

-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하여, 직업안정법, 선원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한 유형의 범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그동안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었다가 새로 마련한다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및 ‘염전 노예’ 사건처럼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¹⁾ 등에서 언론 및 국민의 관심이 높

은 것으로 보임

- 특히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는 대다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양형통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요소가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본론

■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관하여

- 현재 양형기준안은 양형기준 설정대상을 크게 ① 근로기준법 제107조(5년 이하 징역) 위반 범죄와 ② 근로기준법 제109조(3년 이하 징역) 위반 범죄로 구별하여, 이 2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휴업기간 중 해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이유로 실제 징역형으로 처벌된 사례가 없다는 점, 처벌사례가 거의 없거나 대부분 벌금형으로 기소, 처벌되는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권고하는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지, 적정한 권고 형량범위나 양형인자를 제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규범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양형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 결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통상의 범죄와 달리 특히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좀 더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 실제 사례에 있어서는 산후 휴가 도중에 해고통고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나, 대부분의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거나 법정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사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고, 그 이면에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왔기 때문에 더욱더 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싶음
- ▶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범죄 유형이라면 굳이 양형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적을 수 있고, 실제 징역형의 통계사례가 없기 때문에 적정

1)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서 장애인인권단체가 2014. 12. 7가지 혐의로 해당 업주를 고발하였으

나 검찰은 2015. 7.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기소유예하고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했음. 장애인인권단체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검찰에서 항고를 받아들여 다시 수사가 진행중임.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5/0200000000AKR20150915191400054.HTML?input=1179m>)에서

인용

한 범위나 형량인자를 제시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그러나 징역형의 양형기준안이 없기 때문에 더욱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는 경향도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됨

-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기준으로 양형위원회에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임
- 휴업기간 중 해고는 질병이나 출산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함

■ **범죄유형 분류에 관하여**

- 양형기준안은 범죄유형을 근로기준법 제107조(강제근로·중간착취)와 제109조(임금 등 미지급)의 2개의 대유형으로 분류하고,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은 미지급 금액에 따라 3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 설명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수에 따라 '일반적 미지급'과 '다수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대상 범죄들이 모두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서 이득범죄와 유사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사기, 횡령·배임범죄 등 대부분의 이득범죄에서 금액에 따라 소유형을 분류했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음
- 임금 등 미지급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범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얻으므로 일견 이득범죄와 유사함.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조), 설명자료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평등·인격권의 보장을 위해 근로조건의 대등결정·균등대우, 강제근로·폭력·중간착취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따라서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은 죄질의 판단에 있어서 사업주가 미지급한 금액이 얼마인가보다 몇 명의 근로자에게 얼마나 장기간 임금 등을 미지급해 왔는지 여부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임
- ▶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단기간 임금을 미지급했으나 근로자 임금이 고액인 사업이라서 미지급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장기간' 임금을 미지급해서 생계에 절박한 위협을 초래했으나 근로자

임금이 적은 액수라서 그 총합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미지급 근로자 수 및 미지급 기간은 소유형 분류기준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형인자나 집행유예 참작사유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미지급 근로자 수' 및 '미지급 기간'을 양형인자나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고려해 보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함

■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제시된 양형인자나 집행유예 기준의 참작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 없음. 다만,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의 국민 생활 관련성 및 빈번한 발생에 비해 사건화가 많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히 이 유형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유무 또는 대소라는 측면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양형인자나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더욱 더 검토, 발굴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다. 법무부

-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두고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부분은 삭제함이 상당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정의 관련,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에 부적합
 -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정의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
- 별도의 일반감경인자로 두고 있는 '진지한 반성'과의 구별 곤란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수정안의 주요내용

■ 대상범죄

- 강제근로 등(폭행, 협박, 강요)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사용자가 폭행, 협박 등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폭행, 협박 등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공급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폭행, 협박 등으로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	선원법 제167조 제3호, 제25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중간착취 (영리, 금품, 이익 취득)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로부터 금품, 이익을 취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제32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직업소개 등에 종사하는 자, 노무·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선원모집, 채용과 관련하여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 부터 직업소개, 모집,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이익을 취득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5호, 제11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임금 등 미지급(임금, 퇴직금, 수당 등 미지급)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금품청산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지급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박소유자의 임금 등 미지급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2,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급사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	파견법 제43조 제3호, 제34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퇴직금 미지급, 퇴직연금 급여 내지 부담금 등 미지급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벌금
선박소유자의 퇴직금 미지급	선원법 제170조 제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5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지급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양형기준

- 강제근로·중간착취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강제 근로 · 중간착취 등	- 8월	6월-1년	10월-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증거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임금 등 미지급

구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6월	4월-8월	6월-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 8월	6월-1년	8월-1년6월
3	1억원 이상	6월-1년	8월-1년6월	1년2월-2년6월

구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악의적인 미지급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검토의견

■ 양형기준 유형분류의 적정성

- 강제근로와 중간착취 양형기준 유형의 구분 필요성

- ▶ 동 기준안은 강제근로와 중간착취를 동일한 양형기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강제근로는 폭행, 협박, 감금, 강요 등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유형이고, 중간착취는 모집 및 채용 등과 관련한 금품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유형임
- ▶ 이와 같이 법익을 달리하는 두 가지 범죄유형을 하나의 양형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양형기준 형량범위 설정의 적정성

- 강제근로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은 형법상 강요죄 혹은 폭행 협박죄에 준

하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바, 동 기준안의 형량범위 설정은 적정하다고 생각함

- 중간착취의 경우 취업알선 브로커의 형태로 금품이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폭행·협박에 의한 강요행위 보다는 불법의 정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 강제근로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함
-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양형기준은 금액을 기준으로 형량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금액을 기준으로 형량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다른 양형기준에 비추어 볼 때 '1억 원 이상'의 경우 기본 형량범위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다른 양형기준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기본 형량범위는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됨

■ 양형인자의 적정성

- 강제근로와 중간착취를 동일한 양형기준으로 설정함으로 인해, 중간착취 행위와 관련한 가중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생각됨
 - ▶ 예를 들어 모집이나 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취업방법을 알려주고 금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적 요소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 그리고 행위자 가중요소가 동종 누범 하나밖에 없는데, 강제근로 혹은 중간착취와 관련한 사례분석을 통해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인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강제근로와 중간착취의 일반양형인자 가운데 행위 감경요소로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를 들고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취득하면 범죄가 성립하는데도 불구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소비하지 못하거나 보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형을 감경할 사유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임
- 임금 등 미지급 양형기준에 있어서 일반양형인자 가운데 행위 가중요소가 전혀 없는데, 이 경우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의 수를 비교하여 선택된 구간 내 형량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간의 하한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합리적 양형판단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 종합의견

-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양형기준은 관련법령의 규정들을 반영하고는 있지

만 강제근로와 중간착취를 동일한 양형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임금 등 미지급 양형기준에 있어서 '1억 원 이상'의 기본구간은 다른 양형기준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에 대하여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
- ▶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전무이사직에 있으면서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근로자들을 임시 고용한 바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자기가 맡은 분야의 업무만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사무에 관하여 대내외관계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 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고, 생산관리이사가 공장의 업무관리를, 영업담당이사가 영업관계 업무를, 감사 겸 기획실장이 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기가 맡은 분야의 업무를 각자 수행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이처럼 판례는 엄격한 요건 하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자들은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사용자라면 그 자신의 책임아래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징계권, 업무 지시권을 행사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상사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 상사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러한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의무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상사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그에 따르거나 나아가 범행행위에까지 가담한 경우 단지 고용관계에 의한 지시라는 이유로 감경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런 식으로 감경할 경우 사용자 집단 내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바, 사용자

집단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개별 사용자에게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

- ▶ 결론적으로, 고용관계에 의한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감경하는 것은 부당하고, 고용관계에서의 지시가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강요된 상태에까지 이른 경우에 한하여 감경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양형기준안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감경요소로 삼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폭행, 협박, 감금을 당하거나 중간착취를 당한 근로자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어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약자의 지위에 있음. 자신의 일 자리를 지키기 위해, 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해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사실상 강요된 용서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를 삼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성 있음

■ 일반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에 대하여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 ▶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변의 상황이나 자신의 능력 등 행위자의 의지와 무관한 사정으로 인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음. 따라서 이 점을 감경요소로 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 대상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통해 근로를 강요하거나, 사고 발생들을 이유로 근로자를 폭행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폭행 행위 등을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됨. 피해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폭행 이전의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일 수는 있지만, 폭행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그리고 피고인이 불법적인 청탁·알선으로 취업·모집·채용을 하려 한다는 점을 피해자가 모르고 있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고 하여 중간착취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죄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피해자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나, 가해자의 중간착취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감경요소로 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 임금 등 미지급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에 대하여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거래처의 도산, 발주자 또는 직상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등 외부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현금자산이 있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경우, 대지나 건물을 통한 담보대출을 통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대표자의 사재를 통한 변제가 넉넉히 가능한 경우 등 가해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가 가능한 경우까지 거래처의 도산, 발주자 또는 직상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만으로 감경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사용자 및 대표자의 재산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임금지급의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감경요소로 삼는 것이 합당
 - ▶ 사업체 인수과정에서 수익성 검토 등을 통해 인수대상기업의 경영상태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의 사업체를 인수하였다면 물적,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 다시 되팔려는 투기세력인지 의심해 보아야 함. 따라서 이미 경영 악화된 상태의 사업체를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요소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가해자가 해당 사업체를 인수한 진정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2005년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이후 전 세계적인 임금체불 액수가 크게 증가. 고용부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체불임금은 2007년 8403억 원, 2008년 9560억 원, 2009년 1조3438억 원, 2011년 1조874억 원, 2012년 1조1772억 원, 2013년 1조1930억 원 등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였고, 매년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평균 27만 명, 체불금액은 1조2000억 원대에 이름.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변제하고 합의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고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변제를 통해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임. 실제로 임금체불 액수에 비해 극히 적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징역형으

로 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임. 한편 피해회복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매달의 임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의 파탄이 발생한 경우 사후적인 변제를 통해 파탄난 생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도 매우 어려움. 따라서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사정은 일반양형인자로 삼는 것으로 족하고 특별양형인자로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 집행유예 기준

- ▶ 앞서와 같은 이유로 강제근로·중간착취 등에 대하여 고용관계에 의한 지시 등을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를 집행유예 긍정적 요소로 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임금 등 미지급에서 거래처의 도산, 발주자 또는 직상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등 외부적 요인이 있다는 사정,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의 사업체를 인수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곧바로 집행유예 긍정적 요소로 삼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긍정적 요소 중 주요 참작사유로 삼는 것에도 동의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림

바. 고용노동부

○ 배 경

-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양형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제정안(이하 ‘제정안’이라 함)을 마련
- ▶ 제정안에 대해 우리부, 국가인권위,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화

○ 제정안

- 강제근로·중간착취(근기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정안에서는 기본 6월~1년으로 정함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강제근로·중간착취	-8월	6월~1년	10월~2년6월

- 임금 등 미지급(근기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제정안에서는 체불금액에 따라 기본을 각각 정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형	5,000만 원 미만	-6월	4월~8월	6월~1년
2형	5,000만~1억 원 미만	-8월	6월~1년	8월~1년 6월
3형	1억 원 이상	6월~1년	8월~1년6월	1년2월~2년6 월

- ▶ 최근 5년간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건수(1심 기준)를 분석하여 기본양형을 정한 것으로 파악

○ 우리부 의견

- 강제근로·중간착취
 - 강제근로 및 중간착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장 중한 범죄이므로, 죄질에 따라 보다 가중치를 높일 필요
- 임금 등 미지급
 - 매월 지급받는 임금은 가족의 생계와 직결됨에도,
 - ▶ 미지급임금이(체불임금) '11년에 1조원을 넘어선 후, '14년에 1조 3천억 원 까지 증가하였고,
 - ▶ 피해 근로자도 '11년에 28만 명에서 '14년에 29만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
 -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사범으로 인식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형량보다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피해 근로자들은 불만
 - * 체불임금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우리부 근로감독관들에게 피해 근로자가 하는 주요 불만사례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임
 - 따라서, 체불임금에 대한 기본 양형을 5천만 원 미만은 6월~1년으로,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8월~1년 6월로, 1억 원 이상은 1년~2년 수준으로 높일 필요

참고 신고사건 처리 현황

연도	구분	신고 계	처리			처리 중
			계	지도해결 (진정사건)	사법처리 (고소사건)	
'11년	접수건수	193,536	187,415	135,366	52,049	6,121
	근로자수	278,494	268,683	188,098	80,585	9,811
	체불금액	10,874	10,300	6,105	4,195	574
'12년	접수건수	186,624	179,278	121,664	57,614	7,346
	근로자수	284,755	273,423	172,003	101,420	11,332
	체불금액	11,772	11,124	6,252	4,873	647
'13년	접수건수	181,182	175,041	114,064	60,977	6,141
	근로자수	266,508	257,842	157,644	100,198	8,666
	체불금액	11,930	11,391	5,565	5,826	539
'14년	접수건수	195,783	190,077	131,052	59,025	5,706
	근로자수	292,558	283,824	176,209	107,615	8,734
	체불금액	13,195	12,716	6,452	6,264	479
'15년 11월	접수건수	186,767	178,751	128,409	50,342	8,016
	근로자수	269,502	256,893	161,663	95,230	12,609

	체불금액	11,884	11,129	5,419	5,710	755

사. 참여연대

○ 전체적인 의견

- 그동안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 우리 근로기준법의 형사처벌 조항(대표적인 것이 해고제한 제23조)이 이미 많이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되어 있음. 그리하여 현재 남아 있는 처벌규정들은 입법자가 반드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임
-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의 최저기준을 정한 규범으로, 노조조직률이 10% 남짓에 불과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의 정도가 심한 우리사회에서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상시적 근로감독을 통한 행정지도의 효력도 미흡한 상황에서는, 엄중한 법집행과 형사처벌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적용하거나, 약식기소 등으로 처리함으로써 이 법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켜 온 것이 사실임
- 따라서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규범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라는 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지나치게 단순한 2 유형화의 문제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이하 ‘양형기준안’으로 약칭)은 근로기준법 10개 조항 뿐 아니라 직업안정법·선원법·퇴직급여법·파견법·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상의 처벌규정 18개 조항에 관한 양형기준을 담고 있음
- 이들 조항은 유사하거나 공통되는 입법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보호법익과 규범목적이 있음. 예컨대 강제근로와 사업장에서의 사용자 폭행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취지와 목적에 차이가 있고, 직업소개 과정에서의 폭행 협박은 구인·구직 시장에서의 인권 보호라는 별도의 규율대상을 가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양형기준은 그러한 차이와 독자성을 무시하고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과 ‘임금 등 미지급’ 등 단, 2개의 유형으로 이들 범죄를 모두 규정한 후 공통되는 인자와 기준을 실시하고 있음
- 그동안 양형위원회의 다른 양형기준들의 구체성과 분류와 비교할 때, 이는 근로기준법 벌칙 조항의 가치·필요성 자체를 매우 평가절하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법정형이 5년 이하인 범죄와 7년 이하인 범죄(예컨대, 같은 폭행이라고 근로기준법의 사업장 내 폭력과 구직과정에서의 폭력을 금지한 직업안정법 위반이 그러함)는 입법자의 반가치성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양형인자는 물론 형량권고범위까지 똑같은데, 이는 법문의 명시적 표현에도 반하는 것임
 - 또한, 단순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그리고 퇴직급여 미지급 등의 경우도 분명 입법취지 등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임금체불 등’ 하나로 묶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그동안 법원에서 주로 문제된 범죄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사정은 알 수 있지만, 이번 양형기준안에서 다루어진 조항 외에도 노동법상 처벌 규정이 상당히 있고, 이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제시함으로써 반대로 실효성을 높일 필요도 있으므로, 향후 확장될 수 있어야 할 것임 (특히, 노조법 위반에 대한 것들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반드시 필요함)

○ 권고형량 범위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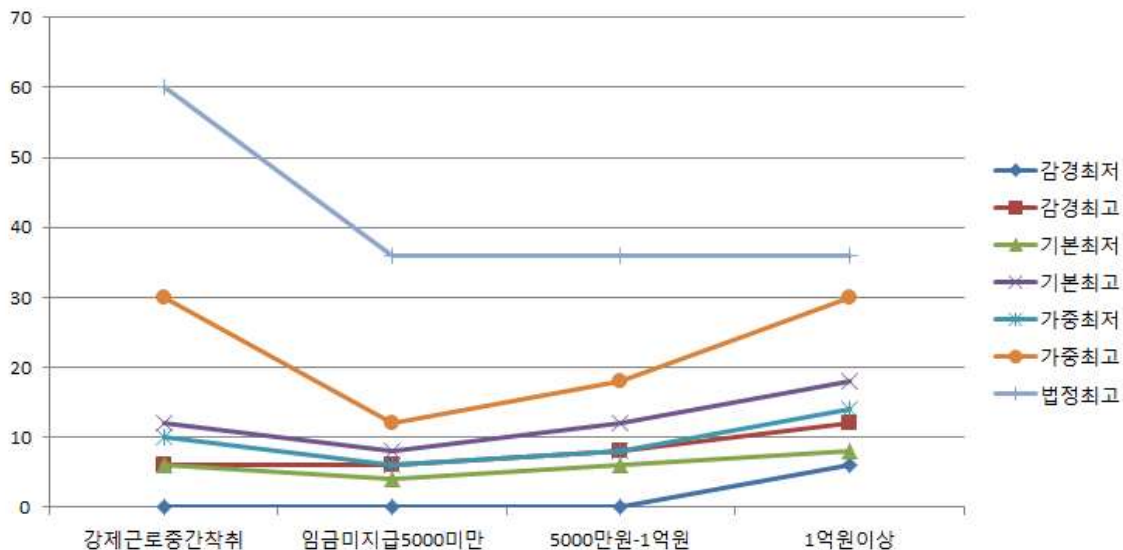
- 이번에 제시된 양형기준(안)의 권고형량범위를 제시하면서 가중 시 최고 기준을 법정형 장기의 1/2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특별양형인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가중기준 최고형(장기)의 1/2까지만 가중하게 되어 있는 것에 따르면 법정형 최고형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3년 9개월까지만 선고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임. 이는 법정형의 취지와 입법자의 의사를 넘어서는 기준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표1> 양형위원회 자료 형종 및 형량 기준

<단위: 개월>

구분		강제근로·중간착취	임금 미지급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감경	최저	0	0	0	6
	최고	6	6	8	12
기본	최저	6	4	6	8
	최고	12	8	12	18
가중	최저	10	6	8	14
	최고	30	12	18	30
법정최고		60	36	36	36

- 제시된 양형기준이 법정 최고형에 크게 못 미침, 강제근로와 중간착취에 대한 법정최고형은 60개월 이하이지만 가중최고형은 30개월에 불과함. 임금체불 중 5000만 원 미만 범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은 36개월이지만 가중최고형은 12개월에 불과함



〈그림1〉 양형위원회 자료 형종 및 형량 기준

-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만 제시하고 벌금형의 양형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위반범죄에 대해 실무적으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음. 근로기준법 위반 범위가 벌금형으로 규율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 필요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검찰과 법원의 구형(판결)시 재량에 따라 불규칙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음.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됨
- ‘임금체불 등’ 권고형량은 ‘체불금액’을 유일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체불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죄수(근로자 1인당 경합범으로 보기도 하지만, 구조적인 경우 포괄일죄로 판단하기도 함)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함 부분이 있음. 임금체불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한 사람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액 기준인 경우와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인 경우, 달리 볼 필요성도 있음
-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양형기준이 불공정함. 구간을 나누는 기준인 5000만 원 또는 1억 원은 근로자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피해금액(사업주 입장)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자 1인의 피해금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자 수

가 적은 사업주는 더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많은 임금체불 사건이 주로 영세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양형기준으로는 영세 사업장 사업주들의 임금체불 범죄를 예방하거나 재범률을 낮추기 어려움

-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피해금액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 1인의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되 특히 벌금형을 구형(선고)할 경우 피해금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벌금을 부과하여 재범을 예방하여야 함

○ 양형인자의 문제

- 다른 범죄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감경·가중요소 외에 노동법과 입법취지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양형요소가 거의 없음. 이는 노동형법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으로 보임. 노사관계의 특수성이나 반노동(조합)의사의 표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자 필요함
- 감경요소가 추상적이며, 명확하지 않음. 강제근로와 중간착취, 임금체불의 감경요소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가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음 등이 포함된 반면, 가중요소는 대부분 구체적이며, 명확하여 재량여지가 없다는 특징이 있음. 결국, 검사(판사)의 의지에 따라 감경은 쉽고, 가중은 어렵게 되어 있음
- 임금체불 등에 관한 양형인자의 경우, 현재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안 된 예외적인 경우라는 점을 고려하여 엄격한 처벌이 필요할 것임.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 상습범에 대한 명단공개(근로기준법 43조의 2) 외에 가중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점, 반의사불벌죄 전환 이후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변제하면서 합의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고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변제를 통해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과'가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나 진정 후 반의사불벌로 공소기각 또는 공소권없음 처벌되지 않은 전력을 양형인자에 포함하여야 함
-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제도를 악용하여 구조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의 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경영사정으로 인한 것인지 등도 참작할 필요 있음

◆ 석유사업범위반범죄 양형기준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 대유형 전체

- 특별가중인자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와 일반가중인자 '단속 회피 시도'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양형인자간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
 - ▶ 양형기준안은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대규모 또는 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 등을 나열하고 있음
 - ▶ 반면 일반가중인자 '단속 회피 시도'의 예로는, '감시장치, 출입 통제장치 또는 도피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단속 회피를 위하여 다른 용도의 합법적인 제조시설, 공장 등으로 위장한 경우' 등을 나열하고 있음
 - ▶ 위 특별·일반가중인자는 개념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양형인자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가능함
 - ▶ 실제로 양형기준안이 제시하고 있는 일반가중인자 '단속 회피 시도'의 사례들이 곧 특별가중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음
 - ▶ 위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실제 많은 사안에서 문제되는 '감시장치, 출입 통제장치 또는 도피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단속 회피를 위하여 다른 용도의 합법적인 제조시설, 공장 등으로 위장한 경우'는 일반가중인자일 뿐, 특별가중인자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거나, 그와 같은 지침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음

나. 대한변호사협회

○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대하여

- 석유사업법은 그 위반범죄에 대하여 다양한 행위유형과 그에 따른 구성요건, 법정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유사업법의 별칙 조항 중에서는 실제 적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이 있을 것인바, 양형기준안은 실무상 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를 선정한 것으로 보임. 그렇게 해서 ①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와 ②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 판매 등), ③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정량미달 판매)와 ④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부당한 부피증가 판매), 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 등을 자동차 등 연료로 판매) 이렇게 5개를 설정대상으로 한 것에 대하여 충분히 수긍이 감. 그러나 기준안이 ㉠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와 ㉡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정량미달 판매목적 영업시설 설치·개조 등)를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에서 제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음. 위 ㉠, ㉡의 범죄들을 양형기준에서 제한 이유로 대부분 제조·판매 등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되고 제조·판매 등 범죄의 예비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 ㉡의 범죄들이 일선 단속 현장에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2. 1. 26. 석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도입된 점, 실무상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 ㉡ 범죄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적다 할 수 없다는 점,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가 조직화·대형화 되는 추세라면 더더욱 위 범죄들을 양형기준 대상범죄로 설정하여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문이 듭
- 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하셨을 터이지만, 위 ㉠, ㉡의 범죄들과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범죄나 정량미달 판매 범죄와 함께 범하여졌을 때 ㉠, ㉡의 범죄들을 단순

히 일반가중인자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임

○ 범죄유형 분류에 대하여

- 구성요건의 성격과 보호법익,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 판매 등 범죄'와 '정량미달 판매, 부당한 부피증가 판매 범죄'를 대유형으로 나눈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분의 기준이 명확하므로, 이로써 양형기준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나아가 기준안은 '등유 등을 차량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범죄를 '정량미달판매 등' 범죄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위 두 범죄의 처벌조항, 법정형 등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양자를 전체적으로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라는 하나의 대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중·소 유형을 별도로 세분한 기준안에 수긍이 감
- 다만, 기준안은 중·소유형 분류 중에서 '가짜석유제품 등 제조·판매 등' 범죄를 제조량 또는 판매량 등에 따라 5만 리터 미만(중소규모),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일반규모), 50만 리터 이상(대규모)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그 이유로 법원의 형량 분포 통계 자료를 제시했지만(설명자료 제16, 17면), 통계 자료를 보면 30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구간과 50만 리터 이상 1백만 리터 미만의 구간에 있어서 형량에 거의 차이가 없는바, 일반규모와 대규모를 가르는 근거로서 '50만 리터'라는 수량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임

○ 양형인자에 대하여

- 설명자료 제31면에 의하면 특별가중인자 중 하나로 '대규모 또는 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행위를 위와 같이 대규모 또는 첨단시설을 통해 범하였다면 환경오염이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대한 범죄인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지 의문

- 그리고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범죄와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정량미달 판매목적 영업시설 설치·개조 등)를 일반가중인자로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 집행유예 기준에 대하여

- 특별한 의견 없음

다. 법무부

○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 제6호 위반' 부분 특별가중인자 반영

-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는 '중지명령 등 위반, 봉인을 훼손한 경우', 제6호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 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 도입 경위
 -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 제6호는 전문화·기업화 되어가는 가짜석유 범죄의 근절을 위해 '12. 1. 26. 개정 당시 추가된 구성요건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상당
 - 석유사업법이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제44조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가중인자로만 취급
 - 별도 범죄 구성요건으로 추가한 취지에 비추어 양형인자로만 고려시 일반가중인자가 아닌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함이 상당
- ※ 「특별가중인자」는 권고영역을 변경하고 영역 내에서 구형 결정에도 영향, 「일반가중인자」는 권고영역 내에서 구형 결정에만 고려

○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제39조 ① 제4호)' 부분 특별가중인자 반영

-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제39조 제1항 제4호)는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 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 도입 경위
 -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제39조 제1항 제4호)는 정량 미달 판매 등을 처벌하기 위해 '15. 1. 28. 개정 시 추가된 구성요건
 - ※ `15. 1. 28. 개정이유 : '석유제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에 처하도록 하며' (후략)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상당
 - 양형기준안은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하였으나, 별도로 처벌하고자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경우에는 일반가중인자가 아니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상당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양형기준안의 주요내용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2)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의 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3) 용량·용도위반 등

- 2)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이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公差(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3.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의 죄

- 형량 및 형종 구분의 기준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의 죄 - 판매량 규모의 정도
 -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의 죄 - 부정판매의 유형

○ 검토의견

- 양형기준안의 취지
 -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절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석유가격 안정을 해하거나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양형판단의 기준 제시의 취지로 평가할 수 있음
 -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10년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짜 석유제품의 불법 생산과 유통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 가짜 석유는 불법 사업자에게는 큰 부당 이익을 주는 반면 소비자, 정품 유통사업자, 정부의 피해가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계 당국 기관은 예산 및 행정지원 부족으로 가짜 석유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부족했으며 결과적으로 가짜 석유 제품이 크게 늘어남(전재완, 가짜 석유 유통량 추정 및 정책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3)
- 형종 및 형량 기준의 설정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의 죄의 유형은 부정 판매 규모의 정도에 따라 제1유형 중소규모 (5만 리터 미만), 제2유형 일반규모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제3유형 대규모 (50만 리터 이상)로 구분하였음. 동 범죄행태가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판매이므로 그 죄의 중한 정도를 분별함에 있어서는 판매량 또는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되, 가짜석유제품 판매가액의 산정은 불가할 것이므로 판매량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함
 -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의 죄의 유형은 부정판매의 유형에 따라 제1유형 용도위반판매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제2유형 정량미

달 내지 부당한 부피증가판매로 구분하였음. 동 범죄행태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公差(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②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③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인 바, 부정판매의 유형을 각각 용도위반과 정량위반으로 구분함이 상당함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유형의 일반 및 특별양형인자와 감경 및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인자와 “단순가담”인자는 범행주도와 실행행위 분담의 소극성, 경미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함. 따라서 부당하게 이중의 감경평가 근거가 될 수 있음
 -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인자에서 ‘폐해’라는 문구는 직접적 피해 이외에 간접적 이차적 피해까지 포괄하는 내용인지 불분명하여 양형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는데 있어 재검토를 요함
 -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인자의 내용이 “정상적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에게 원료공급행위를 하는 등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정의된바, 정상적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로 보아 감경판단의 인자로 제시하고 있음. 이는 오히려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를 요함
 -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인자의 경우 그 내용의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양형인자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함
- 일반-감경인자인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와 일반-가중인자인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의 내용의 구분이 불명확함
- 용량·용도위반 판매 유형의 일반 및 특별양형인자와 감경 및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인자와 “단순가담”인자는 범행주도와 실행행위 분담의 소극성, 경미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함. 따라서 부당하게 이중의 감경평가 근거가 될 수 있음
 -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인자에서 ‘폐해’라는 문구는 직접적 피해 이외에 간접적 이차적 피해까지 포괄하는 내용인지 불분명하여 양형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는데 있어 재검토를 요함
 -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인자의 내용이 “정상적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정의된바, 정상적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로 보아 감경판단의 인자로 제시하고 있음. 이는 오히려 정상 판매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용도위반 판매하였으므로 그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를 요함
 -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인자의 경우 그 내용의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양형인자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함

○ 종합의견

- 석유가격 안정을 해하거나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양형판단의 기준 제시를 위하여 석유사업법 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제정하는 양형정책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해당 양형인자 정의의 재검토를 요함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단순가담” - 범행주도와 실행행위 분담의 소극성, 경미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함. 따라서 부당하게 이중의 감경평가가 근거가 될 수 있음
 - ▶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폐해’라는 문구는 직접적 피해 이외에 간접적 이차적 피해까지 포괄하는 내용인지 불분명하여 양형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는데 있어 재검토를 요함
 -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정상적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로서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로 보아 감경판단의 인자로 제시하고 있음. 이는 오히려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를 요함
 -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그 내용의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양형인자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와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각각 일반-감경인자와 일반-가중인자로 구분하는 근거가 불분명함

◆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제1, 3, 4유형

- 사망사고 유형의 권고형량의 상한이 현재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각 법정형과 체계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 제1유형 과실치사의 경우 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한은 법정형 상한인 금고 2년과 일치하나,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경우 법정형 상한의 50~60% 수준임(아래 표 참조)
- ▶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상한 자체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각 유형별 상한과 법정형 사이의 체계정합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가중영역 형량범위
제1유형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7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8월 - 2년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 3년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조치의무 또는 제24조 제1항의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0월 - 3년6월

- 제2유형
 -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교통사고 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그 가중영역의 상한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 있음
 - ▶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8월~2년)와 교통사고 치상죄의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8월~1년6월)가 상한에서 차이가 있음

- ▶ 교통사고 범죄는 본질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포함되는 범죄로서 양형에 있어 고려되는 인자도 동일하다고 보이는데, 그 권고형에 차이를 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음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교통사고 치사상죄는 그 법정형이 동일하고,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도 교통사고 치사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교통사고 치사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또한 위 가중영역의 상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음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가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되어 있는바, 구호조치 미이행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특별가중인자나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더 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고의범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떨어지는 과실범에 있어서는 결과 발생 후의 조치 여부 및 조치의 내용을 매우 중요한 양형인자로 평가해야 하고, 교통범죄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별도로 설정해 권고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하고 있음(고의범의 별죄가 성립하기 때문이기도 함)
- 특별가중인자인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제2, 3유형 중 업무상과실이 아닌 중과실치사상죄의 경우는 제외)’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중과실치사상죄의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과실치사죄과 다른 유형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과실치사상죄는 위와 같이 다른 유형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면서도 항상 특별가중인자인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 적용되게 되어 그 위법성을 이중으로 평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나. 대한변호사협회

○ 서론

- 과실치사상범죄는 형법상 과실치사(형법 제267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미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의 피고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 그동안의 양형기준이 주로 고의범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하여 과실범의 대표적인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진행될 양형기준에서 과실범에 대한 양형기준의 기본틀로서 작용할 것이므로, 이를 신중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론

- 유형 및 기본형의 결정
 - 법정형과 행위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기본형을 과실치사에 대하여 6월 ~ 1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에 대하여 4월 ~ 10월,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에 대하여 8월 ~ 1년6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하여 6월 ~ 1년6월로 각각 정한 것은 적절해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감경형량의 기준을 정한 부분에 대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가중형량의 기준에 대하여는 그 중한 결과에 따라 형의 상한을 더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 각 범죄는 모두 법정형의 하한은 없고 상한만이 정해져 있는데, 가중형의 상한이 과실치사를 제외하고는 법정형의 상한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5년 이하 금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7년 이하 징역).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가중형의 상한이 3년 6월에 불과합니다.
 - 과실치사상의 죄는 의도적이지 않은 경한 행위에 비하여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각 범죄에

대하여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그리고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라는 기준에 따라 상당한 가벌성의 편차가 있습니다. 과실 또한 단순과실에서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과실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즉, 고의범에 비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상한과 하한 모두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한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벌금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해 해결하면 되지만, 상한에 대하여는 좀 더 넓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중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제2유형)”
 - ▶ 양형기준안은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제2유형)”를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 부분에 대한 양형기준안의 설명(바. 부분)을 보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 제258조 제1항의 중상해에 대한 설명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중상해는 고의범이므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2유형)”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중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2유형)”
 - ▶ 양형기준안은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2유형)”를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양형기준안의 설명(아. 부분)을 보면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는 상해죄의 특별양형인자인 “중한 상해”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 ▶ 먼저, 상해죄에 대하여는 특별양형인자인 중한 상해가 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일반양형인자로 분류되는 것에 관하여는 상해죄와 과실치상죄는 행위유형이 다른 범죄이므로 납득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 다만, 표현방법상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문구는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상해와 중한 상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안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므로, 그냥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는 표현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것이 양형기준표의 용어 통일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는 표현은 고의범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 집행유예 기준
 - 집행유예 기준의 일반참작 사유 중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수정함이 타당합니다.
 - 집행유예 기준과 관련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할 때 과실범인 이유로 참작사유 중 일부 요소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를 과실범의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참작사유 중
 - ▶ 주의가 필요한 취약한 피해자(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수정함) : 부정적
 -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중
 -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긍정적
 - ▶ 범행 후 구호 후송 : 긍정적

다. 법무부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양형인자로 추가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자가 1인인 경우보다 결과불법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어 가중양형인자로 반영 필요
 - ▶ 일반적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인자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과실치사상 범죄군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신체적 법익에 대한 피해이므로 일반적인 상상적 경합범과 차이
 - ▶ 결과불법이 가중되어 실질적으로 실체적 경합범과 유사한 점을 반

영하여 가중양형인자로 추가함이 상당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처벌불원’에서 제외

-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두고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부분은 삭제함이 상당
 - ▶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군으로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하므로, 피고인이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부당
 - ▶ 별도의 일반감경인자로 두고 있는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과의 구별이 쉽지 않아 중복적용 우려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양형기준안의 개요

- 대상
 - 과실치사(형법 제267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
- 관계조문
 - 과실치사(형법 제267조)
 - ▶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형법 제268조)
 - ▶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 ▶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검토의견

-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의 징역형의 상한은 2년인데 제1유형 “과실치사”에서 가중의 경우 8월부터 2년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데([공통원칙], 1. ①) 이 경우 법정형 상한(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아님)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따라서 이 경우 [공통원칙], 1. ①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가중요소 중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중과실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미 제2유형과 제3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정하는 경우 2중평가가 된다.
- 일반양형인자 / 행위자/기타 / 가중요소 중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하여
 -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양형기준 자체를 “1. 일반 교통사고”와 특별처벌규정이 있는 “2. 교통사고 후 도주”를 구분하면서 후자를 다시 치상후도주(제1유형), 치상후유기도주(제2유형), 치사후도주 또는 도주후치사(제3유형), 치사후유기도주 또는 유기도주후치사(제4유형)를 구별하고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 “사고 후 구호조치”를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다.
 - 과실치사상범죄의 경우 사고 후 유기도주 등의 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일반양형인자의 행위자/기타의 가중사유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교통범죄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고 후 도주행위가 중대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처벌규정이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양형기준 자체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와 “일반

교통사고”를 애초부터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에서 단순히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 상응시켜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사유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사고 후 구호조치의 해태는 중대한 행위불법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다면 특별가중인자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범죄와 달리 과실치사상범죄의 경우 사고 후 구호조치 해태에 대한 특별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양형인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 “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
- 피해자가 위험시설의 설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피해자가 사고에 관여한 경우로 단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다. 위험시설 설치에 참여한다는 피해자의 승낙은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위험의 인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사.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 앞서 이미 언급한 이유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종합의견

-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회신 의견 종합

가. 대법원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상향 의견
 - ▶ 최근 이른바 ‘크림빵 빵소니 사건’에서 문제된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움
에도, 양형기준[감경영역(2년 6월~ 4년), 기본영역(3년 ~ 5년), 가중
영역(4 ~ 6년)]이 다소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 **교통사고치사범죄의 기본영역 상한 상향 검토**

- ▶ 교통사고치사 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 다만, 교통사고 치사범죄의 가중영역 상한을 1년 6월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교통사고 치사범죄의 기본영역 상한을 1년 6월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음
- ▶ 수정된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의하면, 특별한 다른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 1유형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가 8월~2년인데 반하여, 특별한 다른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 2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가 8월~1년6월에 해당하게 됨
-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이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리될 소지가 있음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한 부분**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일반감경인자에서 완전히 삭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한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남겨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 ▶ 시행 예정인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에는 ‘사고 후 구호조치’가 일반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반대로 ‘사고 후 미조치’가 일반가중인자로 반영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굳이 교통범죄의 일반감경인자에서 ‘사고 후 구호조치’를 완전히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의 주된 발생장소(도로)에 비추어 볼 때 구호조치가 다른 과실치사상범죄 보다 특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사고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였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아예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주하지는 않았으나

구호조치를 다소 소홀히 한 경우 등)에 비해 가벌성이 많이 약하다고 할 것임

- ▶ 수정안에서는 ‘사고 후 구호조치’를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하면서도, 과실치사상범죄에서와 같이 ‘사고 후 미조치’를 가중인자로 반영하지도 않으므로[이는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보이기는 함], 사실상 일반 교통사고 치상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감경인자로 반영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 따라서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과의 균형만을 이유로 이를 완전히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임

나. 대한변호사협회

○ 수정안의 주요내용

- ‘일부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수정하고, 일부 양형인자를 신설 또는 삭제하는 것

○ 검토의견

■ 권고 형량범위 수정에 관하여 - 찬성

- 교통사고 범죄 중 교통사고치사상, 교통사고 후 도주 등 양형을 통계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선고되는 사건이 다수임을 감안하여 형량범위를 실무와 일치하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것인바, 바람직하여 찬성

■ ‘난폭운전의 경우’ 특별양형인자 추가 등 - 찬성

- 2016. 2. 12. 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제46조의3(난폭운전금지)와 제115조의2를 신설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음. 수정안 설명자료에서도 적시한바, 도로교통법 상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일부는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중첩되어 특별가중인자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와 동등하고 죄질이나 가벌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난폭운전을 특별가중인자로 추

가하는 수정안에 찬성

■ 개방적 정의 규정 추가 - 찬성

- 교통범죄의 경우에도 양형인자를 개방적으로 정의하여 사안에 따라 양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그런 점에서 개방적 정의 규정을 추가하려는 본 수정안에 찬성

■ '일반 교통사고'유형에서 '사고 후 구호조치'를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 - 반대

- 통계상으로 도주나 미조치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법원의 판단 및 블랙박스 등 첨단기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구호조치 여하에 따라 상해의 정도나 사망 여부가 달라지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은 교통관련 범죄의 보호법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경제범죄의 경우와 비교해 볼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에 준하여 평가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임.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긍정적 사유 내지 감경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함.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과 적극적 구호 및 후송조치를 감경 내지 적극적 양형인자로 고려하는 것을 서로 별개의 문제라고 보이고 각 필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될 문제라고 생각함. 따라서 개정안에 반대

다. 법무부

○ 검토배경

- '16. 2.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

※ 대검 공판송무부 의견 취합 필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내용

■ 형량범위 상한 상향

- 상한을 벗어나 선고되는 양형실무를 반영하여 상한을 상향 조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 치상	- 6월 8월	4월 - 10월 1년	8월 - 1년6월 2년
교통사고 치사	4월 - 10월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치상 후 도주	6월 - 10월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 **특별가중인자 수정**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사항’ 전부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 현행 기준은 위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로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거나, 그 외에 단서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했으나, 수정안은 단서 중 1개에만 해당하더라도 가중영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수정
- 개정 도로교통법의 ‘난폭운전’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 신호위반, 앞지르기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가중영역으로 처벌하도록 수정
- 기존 감경인자인 ‘사고후 구호조치’를 삭제
 - ▶ ‘사고 후 구호조치’는 사고 야기자의 법적 의무인 점을 감안, 감경인자에서 제외

○ 수정안에 대한 의견

▪ **수정안 내용에 대한 의견 : 양형기준 상향 취지에 공감**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 최고’라는 오명을 안고 있음에도 교통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팽배
 - ▶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취지에 공감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별도 유형의 형량기준 필요**

- ‘07. 12.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특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위험운전치사상죄’ 규정을 신설(특가법 제5조의11)

※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치사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교통법상 교통사

고의 범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인 것과 큰 차이

- 그러나 양형기준 수정안도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범위를 교통법상 교통사고와 같은 유형으로 규정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비판 불가피
-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서 입법취지 및 특별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법상 교통사고와 별도 유형으로 구분하여 형량기준을 설정함이 적정

■ 다수 인명피해 사건 가중처벌 필요

-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사고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아 보다 엄격한 양형기준 필요
- 현행 양형기준에는 대중교통수단 교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양형인자 부존재
- 대중교통수단 교통사고에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와 같은 형태로 구체적 양형인자 설정 필요

※ 현행 양형기준에 의하면 식품·보건 범죄, 폭력범죄, 방화범죄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규정

라. 국민권익위원회

-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핵심내용은 1) 양형실무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다소 상향시키고, 2) 도로교통법 개정 에 따른 '난폭운전의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추가하고, 3) 양형인자와 관련 개방적 정의규정을 추가한다는 것임
- 위 수정안 내용은 전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일반 교통사고의 유형분류와 관련 불법성과 범정형에 차이가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 하나의 유형에 속해 차별성이 없음
 - ▶ 즉, 현행 양형기준은 일반 교통사고 항목에 '교통사고 치상' 및 '교

통사고 치사'로만 구분을 하면서 교통법 제3조 제1항과 특가법 제5조의11을 구분 없이 모두 포함하고 있음

- ▶ 그러나 교통법 제3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인 반면, 특가법 제5조의11 중 '치상'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고, '치사'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으로 그 차이가 매우 큼
- ▶ 교통법 음주운전 처벌 규정만으로는 음주운전 사고 억제효과가 미약하다는 판단 하에 2010. 3. 특가법에 교통법 보다 무거운 처벌규정을 새로 신설한 것임

○ 따라서 위와 같은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규정 도입의 취지를 반영하여 양형기준 상 일반 교통사고 항목의 유형을 적절히 나눌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마. 대한법률구조공단

○ 검토배경

- 양형위원회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함에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음주운전치사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운전치사상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음
- 양 규정의 구성요건, 법정형, 입법취지 등을 살펴보고, 양 규정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함

○ 규정현황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게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규정검토

■ 입법취지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은 교통법의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시킨 자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억제할 목적에서 2007. 12. 신설된 규정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7921) 의안원문 참조

■ 구성요건

- ▶ 교통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는 것'이며, 제2항 단서의 음주운전은 위 죄의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임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 ▶ 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 **법정형**

- ▶ 교통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

○ 검토의견

-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운전사고를 교통법 보다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라는 점, 양 규정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규정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 따라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교통법상 음주운전치사상을 구별하여 가중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이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함

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수정안의 주요내용

▪ 권고형량 범위 상향 조정

- 일반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6월(8월)	4월 ~10월(1년)	8월 ~1년 6월(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10월(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10월(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 6월	2년 ~ 4년	3년 ~ 5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 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난폭운전을 추가하고, 그 정의 규정에 ‘개방형 정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일반감정인자에서 삭제함

○ 검토 의견

■ 양형기준 수정안의 타당성

- 권고 형량의 상향 조정
 - ▶ 통계 분석을 통한 양형 실무를 고려하여 상한을 조정한 점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 ▶ 다만 형량이 기존의 양형실무를 고려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책임에 비례한 양형이 도출될 것인지는 의문임
 - ▶ 일반국민의 법의식과 형사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형량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특별가중인자에 ‘난폭운전’을 추가
 - ▶ 2016년 2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이 시행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특별가중인자에 ‘난폭운전’을 추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 ‘개방적 정의규정’ 추가
 - ▶ 명시적으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개방적 정의규정을 둠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양형인자의 합리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함
 - ▶ 복잡다기한 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양형인자를 모두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방형 정의규정’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양형

기준이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면 ‘개방적 정의 규정’은 최소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일반교통사고 유형에서 ‘사고 후 구호조치’를 일반 감경인자에서 삭제
 - ▶ 과실치상범죄 양형 기준안에서 ‘사고 후 구호 미조치’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어 균형을 고려하여 일반교통사고 유형에서 ‘사고 후 구호조치’를 삭제한 것은 타당함
 - ▶ 또한 도로교통법 상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사고 후 구호조치를 법적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고 후 구호조치’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함

○ 종합의견

-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은 양형실무를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상향하고, 2016년 2월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반영하여 ‘난폭운전’을 반영하고, 과실치상범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사고 후 구호조치’를 삭제한 것은 타당함
-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양형인자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하여 ‘개방적 정의규정’을 추가한 것도 타당함

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귀 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첫째로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고, 둘째로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하며, 셋째로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넷째로 피고인

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를 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① 일부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수정하고, ② 일부 양형인자를 신설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서, 그 권고 형량범위에 있어 일반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치사 사건은 통계분석 결과에 나타난 양형실무를 반영하는 등으로 그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그 양형인자의 신설 등에 있어서는 2016. 2. 12. 시행된 난폭운전의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 개방적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그 양형인자를 수정한 결과의 내용과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서 사고후 구호조치를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하는 내용임
- 이와 같은 양형기준의 수정, 추가 등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귀 위원회가 고려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등의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시의적절하고 타당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귀 위원회에서 의견 조회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타당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나 지적할 문제점은 따로 없음

VI.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2차 공청회 결과 보고

1. 공청회 개요

- 일시 : 2016. 2. 1.(월) 14:00~18:1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 주제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 참석자 : 총 70여 명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양형위원 : 김장겸, 박광민, 심상철, 이창형, 이규진(상임위원)
 - 전문위원 : 이재권(수석전문위원), 김세중, 김현아, 김혜경, 이용, 최준혁, 황병헌
 - 일반 시민, 기자,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사회자 : 이규진 상임위원
- 발표자 : 이재권 수석전문위원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지정토론자
 - 이정민(단국대 법학과 교수)
 - 박수정(변호사)
 - 김소영(MBC 사회1부 부장)
-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지정토론자
 - 윤동호(국민대 법학과 교수)
 - 정관영(변호사)
- 과실치사상범죄 지정토론자
 - 김재윤(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현곤(변호사)

Ⅶ. 전문위원 개임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전문위원 개임

가. 개요

- 2016. 2. 26.자로 김세중 전문위원, 2016. 2. 11.자로 김현아 전문위원 각 임기만료, 2016. 2. 27.자로 최진녕 전문위원 사임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나. 고려사항

- 연구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분위기 쇄신
 - 종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제1, 2, 3, 4기 양형기준 수정 및 제5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 수행
- 정기적인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전문위원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 그동안의 전문위원의 연구 성과와 활동 내역을 객관적으로 검토·평가하여 개선 방안 모색
- 전문위원 선정 원칙의 반영
 -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강화
 - 전문위원 연령 및 전문성 고려

- 다양한 전공분야 안배
- 추천 기관 또는 위원 의견 존중

다. 위촉 내역

(1) 신규 위촉

- 안종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2016. 2. 27.자)
- 박수정 변호사(2016. 3. 7.자)

※ 신임 전문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참조

(2) 연임 위촉

- 김현아 대검찰청 연구관(2016. 2. 12.자 연임)

라. 진행 경과

- 2016. 2. 26.자로 김세종 전문위원, 2016. 2. 11.자로 김현아 전문위원 각 임기만료, 2016. 3. 6.자로 최진녕 전문위원 사임
- 2016. 2. 27.자로 안종열 전문위원, 2016. 3. 7.자로 박수정 전문위원 신규 위촉 및 2016. 2. 12.자로 김현아 전문위원 연임 위촉

마. 전문위원 구성

구분	팀장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교수	교수
수석 전문위원	이재권						
제1팀	황병헌	황병헌	이용	박수정	박지선	이진국	최준혁
제2팀	김현아	안종열	김현아	범현	강수진	김혜경	노수환

2.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 2016. 3. 28.(월) 16: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위촉장 수여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 안종열, 박수정 전문위원

VIII.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 [의결 후 절차]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 양형기준 책자 발간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16. 3. 28. 양형위원회 제71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16. 4. 중순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16. 4. 하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 관리국)

IX.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의견

연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6. 1. 12.	○ 게시자가 피고인인 형사사건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만 토로 및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
2	2016. 1. 19.	○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제재(면허취소처분)뿐 아니라 다른 조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토로하는 내용
3	2016. 2. 10.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힌 경우 등에 대해 양형 기준을 강화해서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
4	2016. 2. 13.	○ 살인죄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5	2016. 2. 27.	○ 횡령죄에 대한 지방법원과 서울법원의 형량 차이에 대한 불만토로 및 문제점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사전에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심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위 게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도 없고,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건에 대한 상담은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살인죄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시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의견처럼 횡령범죄의 양형이 서울과 지방간 차이가 있다는 통계 자료는 확인된 바 없고 구체적 개별 사건마다 양형은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령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의 양형기준 부분(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현재 수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주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을 수정과정에서 참고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2. 서면 질의 및 회신

○ 서면질의

순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16. 2. 11.	○ 위 진정인으로부터 양형위원회 기획운영 제2278호(2015. 12. 17.)로 접수된 민원질의서에 대한 회신(특정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중 형법 제329조 부분에 대한 현재의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의견이 제5기 양형위원회의 수정 대상범죄로 선정되어 추후 전문위원 회의를 거쳐 양형위원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이라는 내용임)을 받아본 후, 그에 대한 추가 질의로 제5기 양형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와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재심의 소가 이어지는 경우 양형기준이 없어 각 법원마다 혼란이 예상되므로 그에 대한 대책 문의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절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은 현재 전문위원단의 연구·검토가 진행 중이고, 수정 양형기준의 최종 의결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아울러 양형기준이 없는 경우, 각 재판부에서 기존 양형사례와 법정형 변경 경위를 참작해서 적정한 양형을 구현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별지]

■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안 종 열 (安 鍾 烈)
	생년월일	1977년 2월 3일생, 40세
	출 생 지	경북 울진
	직 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연 락 처	02-3480-1940
학 력		
○ 1995. 대구 경신고등학교 졸업		
○ 2000.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주 요 경 력		
○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2003. 공군법무관		
○ 2006. 대구지방법원 판사		
○ 20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		
○ 2012. 대구지방법원 판사		
○ 2013. 대구고등법원 판사		
○ 2015.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		
○ 2016. [現]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박 수 정 (朴 修 貞)
	생년월일	1972년 9월 10일생, 45세
	출 생 지	전남 광주
	직 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연 락 처	02-6182-8624 / 010-4806-0803
학 력		
○ 1991. 광주 동아여자고등학교 졸업 ○ 1996.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1998.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 ○ 2005.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 요 경 력		
○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2007. - 2013.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변호사 ○ 2013.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 2013. - 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 2014.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9차 공청회 지정토론자 (약취·유인범죄 지정토론자) ○ 2014. 1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1차 공청회 지정토론자 (장물범죄 지정토론자)		